빈곤분야 인권활동가 교육
“소외계층인권보호 우리가 함께해요”

일시 : 2005.7.13(수) ~ 7.14(목)

장소 : 원불교 봉도 청소년수련원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부설)전국빈민상담네트워크본부

◈ 목 차 ◈

▶ 교육일정 및 내용..... 1

▶ [제1강] 인권일반에 대한 이해..... 5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제2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제3강]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 37
최영민(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Ⅰ.기초생활보장제도란?..... 47

Ⅱ. 수급자 선정기준..... 51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5

Ⅳ. 조사..... 70

Ⅴ. 재산조사..... 79

▶ [제4강] 기초생활보장법 상담사례 및 상담기법..... 95
류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 교육실장)

▶ [제5강]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123
김희성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Ⅰ. 의료급여..... 123

Ⅱ. 의료급여 이외의 의료제도..... 127

Ⅲ. 노인복지제도..... 129

Ⅳ. 장애인 복지제도..... 134

Ⅴ. 모·부자가정 복지제도..... 139

Ⅵ. 아동복지제도..... 141

Ⅶ. 창업 자금지원 제도..... 149

Ⅷ.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156

Ⅸ.신용회복지원제도..... 158

▶ [부록1]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165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록2]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177

[부록3] 의의신청서 견본..... 181

[부록4]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183

[부록5] 관련 홈페이지..... 185

○ 교육일정 및 내용

시 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 7.13 (수)		
12:00 ~ 13:00	점심식사 및 등록	빈곤문제연구소
13:00 ~ 13:20	인사말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국가인권위원회 나영희 교육협력국장 김대철 국내협력과장
13:20 ~ 15:20	【강의1】 인권일반에 대한 이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15:30 ~ 17:00	【강의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
17:00 ~ 18:00	저녁식사	
18:00 ~ 20:00	【강의3】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	빈곤문제연구소 최영민 간사
20:00 ~ 22:00	【인권감수성 교육】	다산인권센터 박김형균 인권교육교사모임 이기규, 강현정
22:00 ~ 23:00	【자유토론】 저소득빈곤계층의 인권보호에 대한 활동가 및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빈곤문제연구소 류미령 상담교육실장
23:00	취 침	
▣ 7.14 (목)		
8:00 ~ 9:00	아침식사	
9:00 ~ 11:30	【강의4】 기초생활보장법 사례 및 상담기법	빈곤문제연구소 류미령 상담교육실장
11:30 ~ 12:00	기초법 질의 및 토론	빈곤문제연구소 류미령 상담교육실장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5:00	【강의5】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적부조제도	빈곤문제연구소 김희성 간사
15:00	폐회	

제1강 : 인권일반에 대한 이해

우리사회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www.hrights.or.kr

오늘 이 자리가 인권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소망해본다. 바로 지금부터 진행하려는 인권교육을 통해서이다.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을 알고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단순한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인권감수성'**을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 내게도 가장 큰 화두는 '감수성'이다. 그런데 이 감수성이란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통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감동으로 남아있는 어떤 시(詩) 한편이 있다고 치자. 한편의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도교육에서 배운 시의 형식이나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여성편향적이라는 식의 주입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가 내가 처한 상황과 맞아 떨어졌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일 게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는 시는 좋은 시이기보다는 내게 맞는 시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끄집어낸 시이다. 시와 나의 감수성이 만날 때, 시는 살아 움직이며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울게 만들기도 한다.

'활동가'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 단체는 이 '활동가'라는 표현이 전업으로 운동하는 사람과 대중을 나누고, 무언가 배타적인 어감이 배어있고, "나는 대중보다 우월하고 도덕적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쉽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다. 90년에 나는 교회 계통의 지역운동을 하면서 이 활동가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활성가'**라는 말을 만났다. 이 표현은 활동가와 대중의 배타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활성가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대중(이 표현밖에 쓸 수 없는 나의 빈곤한 상상력이 원망스럽다)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활성가는 대중이 스스로 갖고 있는 답을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돕기만 하고, 말이나 행동은 대중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감수성과 활성가의 의미가 딱 맞아 떨어지는 영역이다. 답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렇지만 겨우 내게 주어진 겨우 두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재주로 나와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다만 노력을 해볼 뿐이다.

오늘 모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권의 진전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인권에 대해 알고 있고, 또한 이해하고 있는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인다.

우리 모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국가주의의 강요된 주입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제도교육에서 단 한번도 인권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인권운동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나도 '장애 감수성'이나, '성적 소수자 감수성'에 대해서는 부족하기만 하다. 초등학교 시절 내 친구들 중에는 장애인이 한명도 없었고, 성적 소수자[1]도 없었다. 나는 지금도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무심해야 하는지, 배려해야 하는지부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까지 나는 온통 모르는 것 투성이인 사람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에도 굳이 '우리'를 거론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이 인권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의를 통해 인권을 알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사람인가?** 하는 고민을 시작해 볼 수 있다.
독일 히틀러는 무려 600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했다. 끔찍한 홀로코스트이다. 그러나 이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독일 총통이었던 그는 아마도 단한명의 유태인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무려 600만명이다. 이 많은 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었음이 분명하다. 군, 경찰은 물론이고 공무원 조직과 민간까지 합세해야 단기간에 600만명을 죽이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독일 국민은 히틀러의 죽음과 패전을 겪으면서 모든 학살의 책임을 히틀러에게만 돌려세우면서 자신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 버렸다. 직접 학살에 참여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유태인을 죽였을 뿐이다"라고 대답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에서 유태인은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 대량학살의 피해자였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난

1) 있어도 말할 수 없었을 테니까,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되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한 종교 지도자 겸 국회의원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 공격을 할 때 망설지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가 비록 어린이나 노인, 또는 여성일지라도 악마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악마에 대한 공격은 너무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때,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는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사람의 범주에서 간단하게 제외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험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전쟁 전후 자행된 민간인 학살을 통해 희생된 사람은 무려 100만명에서 1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인에게 있어 유태인이나 유태인에게 있어 팔레스타인인은 그래도 무언가 다른 것은 있었다.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그렇지만 민간인학살에서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른 것이 거의 아무 것도 없었다. 한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죽인다. 역시 같은 질문을 던져 보자. “어떻게 한 마을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인데,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 민간인학살의 가해자들의 대답은 이렇다. “내가 죽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빨갱이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불신지옥, 예수천국”을 외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노조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된다는 삼성의 전근대적(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왕조적) 사고와 실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교환의 매개인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값이 달라지고, 죽고 사는 문제까지 심대한 영향을 받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기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유 때문이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니 사람으로써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즉,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잣대가 된 **보편성**이다.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편성의 원칙은 그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유민이고 남성인 자들만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혜택을 받던 아테네식 민주주의나 왕의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정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이 치열한 투쟁의 결과,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것임을 천명하기에 이른다.(세계인권선언, 1948.12.10)

그러나 보편성은 그저 벽장 속의 보화처럼 무의미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있다고 선언하였지만, 이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여전히 제국주의는 자국민을 제외한 식민지 민중에게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

할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현실도 “인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귀하디귀한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큰 규범력을 갖고 있는 이 규정이 현실에서 가지는 힘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가장 평등해야 할 사법절차만 해도 그렇다. 돈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의자 단계가 아닌 피고인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그것도 극히 형식적인 도움만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심문시 변호인 참여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재들은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하늘과 땅의 그것처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교육도 받고, 아프면 진료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돈이 없다면?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곧바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늘 돈이 없다. 나는 돈이 없음에서 오는 인간답지 못한 상태를 운동을 함으로써 돌파하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 않은가 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때로 나를 속이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고 있다. (오로지 돈 문제만 생각하면) 이 지겨움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나는 자신할 수 없다. 다만, 운동을 팔아 돈을 벌지는 않겠다. 선배들처럼 저렇게 추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며 오늘을 버틸 뿐이다.

돈이 없으니까 후배들에게도 얻어먹고, 웬만한 경조사는 아예 가지도 않고,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돈이 없기에 아빠의 노릇도, 남편의 노릇도, 자식의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내게는 두 명의 처남이 있다. 다들 서른을 훌쩍 넘겼고, 큰 처남은 마흔도 멀지 않았다. 그런데 둘 다 결혼을 하지 못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고, 사교성도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그렇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 신접살림을 구할 수도 집을 장만할 수도 없다. 대책은 없고, 나이는 자꾸만 먹어갈 뿐이다. 나와 처남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스무살 때의 인연을 잘 이어 결혼에 성공했지만, 처남들은 그렇지 못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인권운동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다. 사람들은 돈 문제를 인권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 국가주의의 과잉이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이 짝하며 발전해 온 탓이기도 하지만, 인권운동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돈 많은 전문가들의 불순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돈 문제, 가난의 문제는 인권운동이 떠안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권현안이다. 돈만 있으면 곧바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어서 사람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통은 인권의 적이다.

생각해 볼 몇 가지 인권문제

1. 인권의 개념과 역사
2. 인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3. 필요해서 요구하고, 승인받기까지의 투쟁
4. 인권에서 보편성이 가지는 허구와 '우선적 선택'의 필요
5.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눈
6.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제2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존권 보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Ⅰ.생존권과 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존권의 개념

사회복지의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생존권'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바이마르 헌법(1919년)으로서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존을 누리도록 함에 있다.” 고 하여 인간의 가치 있는 생활의 보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 노동기구의 창설과 그 이후의 잇따른 많은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해서 제기되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선언에 의해 널리 전파되어 각국의 계속적인 관심 표명과 노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생존권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태에 봉착하더라도 즉 소득이 부족하든지 혹은 전혀 없더라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는 생존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생존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은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권리성이며 둘째로, 생존권은 단지 살아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2)]

이와 같은 생존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생존유지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자각하고 사회적 성격을 지닌 국민의 생활유지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생존권과 사회보장

가.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생존권 이념의 실현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이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법영역과 체계를 갖춘 사회보장법의 분야가 형성되었다. 사회정책적인 사회보장의 법적 반영인 사회보장법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새로운 법 분야의 하나로서 국민의 생활보장 확보

2)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서울:대학출판사, 1989. p.701.

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목적은 생존권의 확보이다. 사회보장입법의 발전은 법의 현상면에서는 행정권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국가의 한 경향으로서 행정권의 확대가 지적되는데, 사회보장도 이러한 행정권의 확대에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사회보장의 발전은 생활부문에 다소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사회보장이 직접 관계하지 않는 법의 영역에도 파급적인 영향 내지 효과를 미치게 된다.

생활인으로서의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각종 생활사고가 차츰 근로자의 생활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생존권의 이념은 노동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보장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회보장법을 통한 생존권 이념의 실현이란 근로자를 생활주체로서 파악하고 이 생활주체가 봉착하게 되는 생활문제나 사회적 사고를 다루는 것이다. 즉 사회보장법은 근로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주체의 측면으로부터 파악하고 그 생활상의 위험에 대하여 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법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영역에서 생존권의 실현을 꾀하는 법이다. 사회보장법이 포괄하려는 사회적 사고란 실업, 질병, 출산, 다자녀, 산업재해, 장애, 부양책임자의 사망, 노령 등이다. 이러한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사고가 끊임없이 증대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생활상 봉착하기 쉬운 이와 같은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유지한다는 개인생활책임의 원칙을 축으로 그 생활을 옹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사적부양원칙이다.

생존권의 법원리는 시민사회의 법원리인 자유권 사상을 수정함으로써 국민의 현실적인 생존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순서는 생활에 대한 개인의 책임에 입각한 자유권과의 대항관계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같이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사상에 힘입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노동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생존권의 논리는 경제의 논리를 제약 할 수 있어도, 경제의 논리가 인권의 논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회보장에서의 법 우위론의 전제이다. 다라서 생존권의 구체화를 위하여 한 국가의 경제나 재정은 오히려 사회보장의 실현, 확보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존권을 원리로 하여 사회보장의 대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세계인권화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 식.주 . 의료 및 필요한 사회위생시설을 포함하는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나아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의 상실, 노령, 혹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출(嫡出)여하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고 선언함으로써 사회보장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농민, 자영자, 시민 등 일하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으로서 확인하였다.

나.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 이념의 전개과정은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과 근로자의 그 가족, 나아가서는 전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으로서 완성될 수는 없었다. 생활상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수 없는 사람들—예를 들면 아동, 노인, 장애자, 모자(부자)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자립 특히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생존권의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생존권보장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 출발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 더 나아가서는 전체국민의 생활상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체제내의 사회생활의 피해자라는 취약한 계층이다.

3. 국내법상의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의 이념은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관련시켜 파악할 수 있다. 즉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위시하여 각종 개별 사회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명령 등에서 생존권의 이념이 구체화하게 된다. 사회복지법 각각의 규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욕구에 대응해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생존권을 실현하려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러한 생존권의 실천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헌법에서 생존권의 이념은 복지조치 내지 급여의 수급이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나타나 있다. 또한 생존권에 관련된 헌법의 조항들은 개별 사회복지법 제정·운영에 있어 가령 내지는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생존권에 대해서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은 보다 구체적 실천적인 표현으로 변화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이념)에는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

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 형평과 효율의 조화,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다.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에는 세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증진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결국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요청되는 것인 동시에 그것 자체가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회복지법의 적용대상자와 자격요건은 다양하고 또 각각의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욕구 역시 차이가 있지만, 법의 실천을 통해 획득하려는 점은 적용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복지의 증진은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이자 목표이다.
급여의 재원조달이 사회보험이 정기적으로 내는 기여금과 달리, 일반 조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급여수급권의 권리성이 취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공공부조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사회생활 문제가 개인적 결함과 책임을 넘어서 사회구조적·환경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급권의 권리성이 강화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하나는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로 정하여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보장권(基礎生活保障權)'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권은 복지권 보장의 원리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적용된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원리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장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복지부 자료(2001. 9)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됨.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

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II. 생존권 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A-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 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 최저생활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안정적인 가족관계의 저해

□ 개선방안
-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범위축소와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가 병행되어야 함.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현실과 부양의식에 주안점이 두어진 좀 더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범위 축소를 통해 나타나는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음.
- 이에 비해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완화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가족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부조적 부양'이라는 취지에 적절한 판정기준의 설정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 좀더 미시적 차원의 개선이라 볼 수 있음. 실재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보다는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완화를 통해서 더 큰 사각지대 축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2. 부양능력 판별기준의 합리화

□ 문제점
- 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별기준은 저소득 가족내에서 세대간 빈곤의 재생산 내지 빈곤을 가족(친척)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 × 120%)에서 120% 설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미약함.

□ 개선방안

- 현행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안은 현재의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이나 이를생계비기준 200%로 상향해야함
-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는 평균(중위)소득(지출)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두 번째 안의 경우 사회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정 정도 논리적 근거가 확보됨. 즉, 부양의무자가구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수행한다는 '생활부조적 부양의무'의 관점에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음.

A-3. 재산기준 및 소득환산율의 합리적 설정

□ 재산의 소득환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승용차 기준의 경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연 1,200%로서 너무 높음. 일반재산 수준으로 환산율 인하
-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제도보다 훨씬 더 엄격. 현장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
- 근로능력자 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낮음. 이러한 처사는 근로유능력자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냄. 공제액을 근로무능력자 수준으로 인상.
- 너무 낮은 기본재산 공제액. 기본재산공제는 최저주거기준만족 시중 전세가격의 2배가 적당함.
- 가족 수에 상관없이 기본재산 면제액이 똑 같아서 확대가족과 다자녀 가족이 수급자가 되기 어려워 가족해체촉진 가능성 있음. 가구원수별 기본재산 면제액 책정.
-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음.

A-4. 소득조사 시 월세 및 이자 공제제도의 도입

□ 문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 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소득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보다 낮게 파악될 수 도 있다.
- 그런데 가구의 지출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월세가구, 중증장애인이 있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공제 받지 못하는 가구 등이 존재한다.

□ 개선방안

- 주거유형이 월세인 가구와 자가인 가구간에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액의 전액, 혹은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소득조사시 이자 및 압류소득의 공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수급자의 경우는 실제소득에서 이자 및 압류소득을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의 핵심원칙인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빚을 진 가구의 경우 최저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압류소득의 전액 혹은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해서 파악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 소득조사시 추정부양비 부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A-5. 최저생계비를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

□ 문제점

-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055,090원, 1인가구 368,226원
-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표준생계비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기초보장법에는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임.

□ 기본방향

- 기초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설정되어야 한다.
- 일반가구와의 상대적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
- 상대적 수준유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3년마다 실 계측을 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계측년도의 경우만 상대적수준 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계측년도만 상대적 수준 유지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실 계측년도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문제가 남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B-1. 가구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적용

□ 현재 최저생계비의 문제점

-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더 낮다.

-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최저생계비는 전국 어디에서 살건, 가구 구성이 어떻거나 간에 말 그대로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별 물가 차이와 가구유형별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모두의 최저주거기준(주택과 연료비)의 보장(현물 급여)이 필요.
- 대도시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에 비해 더 많이 필요함. 따라서 지역별 생계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지역별로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순 생계비에 사용할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의 전액 공제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혹은 폐지하여야 함.
-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학생 가구의 경우 타 가구에 비해 추가 비용이 필요하게 됨. 필요비용을 계측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학비뿐만 아니라 학용품, 일부 학원비 등의 공제를 하고, 수급가구의 고등학생에게는 그와 같은 품목의 현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C-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충

□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절대적 부족 : 사회복지전달체계 기본토대 미비
-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규모(7,200명)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변화된 일선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수 없음.
- 결국 이로 인한 업무량 과다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전문직의 정체성 상실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인력충원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총 정원제로 되어 있어 인력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공공복지전문인력의 규모는 빈약한 수준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과 사회복지 직렬화 확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약 2만명 확충: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정부 복지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현재 총정원제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별도정원제로 조례개정 및 인력조

정 필요)

- 지방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5급에서 9급까지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렬화를 4급까지 신설.

C-2. 시·군·구단위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전담기구 부재 : 전문성, 책임성, 효과성, 효율성 저하

-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 현행 공공복지행정체계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고 보건복지부 소관정책을 행정자치부 산하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해 집행
-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독자적인 일선복지행정의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 등이 저하됨.
- 선진국가의 복지전담기구는 각 나라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 지방정부단위에 사회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무소 조기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환경을 반영한 복지전담기구 설치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의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개정

※ 최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이 진행되고 있으나 폭증하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필요.

-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 전환 : 읍·면·동사무소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 조직인 지역사무소와 같은 기능부여(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민간사회복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 지역복지서비스 공급기관간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복지총량 제고(지역복지협의체 추진 및 정착).

D-1.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 실태와 문제점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
- 부양의무자 이유 비수급 빈곤층(HLJ) : 2.1%(99만명)
- 재산이유 비수급 빈곤층(GKI) : 2.2%(104만명)
-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총인원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1,8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개선방안

-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 최저생계비보다 보장수준이 높고, 선정기준 또한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의료급여는 전면화 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은 가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음).
-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한데, 수급자와의 일관성을 위해 소득인정액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떠한 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가능하지만 관련 급여를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음.

D-2.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생존권 보장(상)

□ 주민등록 말소자의 생존권 보장

- 주민등록 말소자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사회보장 수혜도 받지 못하며 군대에 가지 않고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제제를 가하지도 않음. 이러한 인권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최소한 60만명은 됨.
- 채권자가 요청하면 쉽게 주민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말소자의 양산을 막아야 함.
-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감. 무료로 쉽게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려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등재된 주거지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기초생활보장번호제도의 확대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말소자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

D-3.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보장(하)
- 저소득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 -

□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보장

- 신용불량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이 부과되거나 부채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된 금액을 소득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기초생활보

장을 기피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생존하지 말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의 자살 사태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있음. 제도개선을 통하여 이들의 재기를 도와주어야 함.

□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신용불량자의 생계문제

-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음. 신용불량 정책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정책에서도 소외된 신용불량자들의 생존권 침해가 심각. 이들을 위한 특단의 탕감, 면책, 대납 등의 지원책이 필요.

□ 생존을 위한 필수품의 압류와 단전단수

- 압류 불가능한 필수품의 범위가 좁음. 생업용 차량이나 영구임대 아파트의 보증금과 같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물품까지 압류됨. 파산법의 개정으로 압류불가능 품목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과다한 과태료부과와 강제퇴거

-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서 강제로 퇴거시킴. 공공임대주택의 과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50%. 과태료에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제로 운영됨. 납부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율의 과태료를 물리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갈 곳이 없는 줄 빤히 알면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은 생존권의 침해로서 시정되어야 함.

□ 단전단수

- 전기, 수도, 가스는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재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채권회수 절차를 생략한 채 단전·단수조치를 취함. 시정이 요구됨.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산 압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금.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체납보험료를 부채로 간주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 남용. 재산압류는 금지되어야 함.

<자료 1>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몇 년 전 인터넷에 독거노인이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교회 봉사자가 입원시킨 후,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제공할 길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다. 그 글을 읽은 필자는 관할 동사무소 복지담당공무원을 찾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엄연히 ‘긴급보호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도움을 제공할 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그는 긴급보호는 구청의 허락 없이는 책정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청 담당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구청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는 긴급생계비와 의료보호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지역의 판자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로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된 할머니를 딱하게 여긴 구의회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담당공무원은 또 다시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제공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필자가 다시 그를 찾아가 “왜 당신은 지난번에도 엄연히 있는 ‘긴급보호제도’를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 번에도 같은 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그는 다시 필자가 직접 구청의 허락을 요청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제도를 잘 아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긴급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다는 서울 강남구의 긴급보호제도 실시 현황이다.

이와 같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와 같이 강남구의회 의원조차도 긴급보호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인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마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양 긴급보호제도를 몇 번이고 재 포장 하여 발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방치된 위기가정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대구에서 아이가 굶어 죽은 후 며칠 동안이나 장롱 속에 방치된, 일인당 국민소득 만4천불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긴급구호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은 긴급구호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만 보장해주는 법이 아니고, 기초법 안에 긴급보호제도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유독 긴급구호 대상자만을 따로 떼 내어서 그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장 절박한 사람들마저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예에서와 같이 법과 제도가 없어서 긴급구호 대상자가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긴급보호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도가 유명무실한 채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복지부에서 바로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뺀 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안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은 전시 행정적 발상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생존의 벼랑 끝에선 위기가정만이라도 제대로 보장해 주겠

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단 한 가지만 개선하면 되는데, 그것은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미리 책정된 한도 내에 묶어두지 않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이다.

재정분권화로 인하여 예산배정방식이 top-down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올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하여 올해 강원도는 29.9%, 충북은 7.4%, 경북은 0.04%가 감소되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 부족으로 올해 급식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22%나 줄어서 신청 고교생의 절반 가까운 1만7천명이 제외시키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가 하면 2004년에 984억원이었던 전국의 아동시설 운영경비가 올해는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긴급구호를 위하여 2005년 기준으로 년 1,784억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2006년 소요예산 추계 시 연 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고 1,385억원, 지방비 399억원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별법 아니라 특별할아버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보호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는가? 만약 시행한다면 일반수급자의 급여를 깎거나 일반수급자를 탈락시켜야 긴급보호 예산을 빼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식의 제도운영에는 결사반대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불쌍한 '생존의 벼랑 끝에선 개인과 가정'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다면,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있다면 법안 제17조(예산지원)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긴급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중앙정부는 매년 긴급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되, 긴급보호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별도로 책정하고, 지원 한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한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그 노력을 게을리 하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실효성 있는 조항이 없어서 이 법은 선언법에 불과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선 보호, 후 조사'에 따르는 비적격자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빌미로 긴급보호대상자 책정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가하는 제제 조항이 부재한 가운데, 제14조 내지 제16조(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사전조사 절차 없이 우선 보호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할 빌미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이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격자를 방치해도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제가 부재한 가운데, 조사도 하지 않고 미리 돈을 내주었다가 나중에 감사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방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네 돈을 써가면서 긴급보호제도를 제대로 시행할 만큼 용감하고 인심이 후하다면 왜 지금껏 제도가 있으나 마나 했겠는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을 방치하여 대구의 장롱 속 아이와 같이 죽음에 이른 경우가 발견되거나, 인천의 아이들을 고층 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

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간주하고 엄중 문책한다.”와 같은 강력한 처벌 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생활보장사업의 조사 ·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매달 실제적으로 선정기준에는 약간 맞지 않으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제도권 안에서 보장해줄 수 있도록 심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2001년 8월 현장조사 결과(최일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위원회를 한두 번밖에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다시 긴급보호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인 긴급보호대상자 관련 업무를 떼 내어 긴급지원심의 위원회로 이관시킨다는 것과 같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제9조(긴급지원기관)에는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직도 주민등록 말소자나 노숙인과 같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2>

기초생활보장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권 보장제도 운영의 문제점

I. 들어가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가장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은 것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생기는 이유들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들이 가족 간의 비밀이나 다른 여죄가 심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이 일부 있으나,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정밀한 조사 이전에 일선 읍면동 사무소의 담당자가 부정적인 답을 한 후 신청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거나 소득인정액 조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채 대강 추정소득을 부과시킨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본연구소의 (부설) 빈민상담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사람 중에서 95% 이상이 급여가 상향조정되거나 탈락자가 구제되었다.

본고에서는 탈락되거나 급여가 적은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신청 및 심사청구권 관련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권 관련 법령 및 시행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의 의의신청 및 심사청구권 관련 법 조항들과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보장위원회

기초법 제20조 (생활보장위원회) ①항에 의하면 생활보장사업의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 그러나 실제 각 지방자치 단체 중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지 않는 곳이 많으며, 구성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담당복지사가 지침의 규정상으로는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나 실제 생활수준이 낮아서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를 수급자로 책정하려고 할 때는 '사실조사복명서'를 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보

장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조사복명서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2. 읍면동 사무소의 의의신청서 작성 협조

기초법 제38조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구두로 의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지 않으며, 그렇게 법 규정대로 수급권자에게 의의신청을 도와주는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의의가 있는 경우에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하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옆 자리의 다른 공무원까지 가세하여 비난 한 후 무안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3. 시·도의 이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기초법 제38조 (시· 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초법 시행령 제39조 (시·도지사의 처분 등)

① 시· 도지사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읍면동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서와 관계서류가 첨부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사례가 거의 없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과연 일년에 전국적으로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복지부 장관의 신청 접수, 통지 및 구제

기초법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 ·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원천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차단하기 때문에 처분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이의가 신청된 예는 별로 없다. 다만 본연구소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잘못 적용된 경우나 지침 해석상에 이견이 생겼을 때에 동사무소 -> 구청 ->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차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런데 툭하면 담당자가 출타 중이라고 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재판을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차명계좌 때문에 부당하게 재산이 높게 산정되었다고 의의신청을 한 조순택 할아버지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절차를 거쳤으나.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일심이 일년 후에 열렸는데 패소했다. 재심을 청구했는데, 청구 후 2년이 지났으나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 기초생활보장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 신청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Q & A 게시판에 상담을 의뢰하면 답을 올리는 제도가 있다.

☛ 이 제도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기초법 시행 초기에는 답변이 1~2일 만에 올라왔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답변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질문자에게만 이메일로 답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그리고 일반인들 이외에 전담공무원이 문의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사이트가 따로 개설되어 있다.

본연구소에서 모니터한 바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문의 후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웬일 인지 답변을 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의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예를 들면 본인은 지난 10월6일에 소년소녀가장 책정에 관한 대구의 담당공무원의 지침해석 오류에 대한 정답을 듣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했다(2633번).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서 11월 19일에 다시 문의를 했다(2812번). 그런데 독촉 질문에 대해서도 한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었다. 그래서 12월 하순에 왜 답을 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답변인 즉, 서버에 이상이 있어서 질문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3개월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서는 질문이 없어져 버렸다는 답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수능부정자를 가려내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 대단한 능력을 동원했는데도 지워진 문서 하나 복원이 불가능한 것인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포르노물과 광고들이 며칠 째 지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사안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과의 담당자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밖에는 운영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7.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를 통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이의 신청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수급권자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즉,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관할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호의뢰 시 해당 주민의 가족사항, 주거·생활실태, 상담내용 등 사전에 확인된 기본사항을 보장기관에 제출(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 가능)하면 보장기관은 보호의뢰를 받은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사항을 본인 및 의뢰한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침에는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하고,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하라고 친절하게 명시해 두었다.

※ 긴급생계급여 실시 : 급여실시 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하여 긴급급여 실시

-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차상위계층으로 관리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적극 부여
-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는 경로연금 적용여부를 확인
- 저소득 장애인 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은 교육비·보육료 지원가능 여부 확인

☛ 그러나 수 천 건이 넘는 의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제까지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하였으며, 긴급보호를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 후 필요한 지원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연구소의 상담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의뢰서를 발급하는 곳은 전국에서 본연구소 한 군데 뿐이라고 한다. 지역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SOS 상담 hot line 1688-1004를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는 SOS 상담 hot line 1688-1004를 지난봄에 개통하였다. 1688-1004로 전화를 하면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나 상담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1688-1004에 전화를 해보면 구청에서 기존에 쓰던 전화에 이 hot line을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 근방에 있는 공무원이 받는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인구가정과의 담당공무원은 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필요하냐고 반문하였다.

실제로 동사무소 담당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청의 담당자와 다시 실랑이를 벌인 후에, SOS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시 조금 전에 설전을 벌리던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SOS 상담 hot line 1688-1004를 통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실시 현황이다.

이토록 정부차원의 상담·지원사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10조(전담기구 설치 등)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 같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위기가정 상담 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민간기관의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민간기구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서 못했는가? 민간기관의 활동은 각 기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디까지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법으로‘할 수 있다’ 혹은‘없다’고 규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닐 것이다. 관치행정의 법제화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III. 개선 방안

본연구소 상담원이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이 사람은 충분히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급자로 책정해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에서 아사한 후 장롱 속에서 발견된 4살짜리 아이의 아버지 또한 수급신청을 하러 갔으나 장애판정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지 않고 왔다.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면 그것이 바로 보호신청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서를 즉시 건네는 등 생활보호의 신청은 원만히 접수해, 필요한 보호를 신속히 개시하여 생존권 보장과 조기 자립 기회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제도는 빈곤의 원인이나 근로능력 여부를 추궁하지 않고 단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록 되어 있다. 그러나 케이스워커는 정중하게 상담을 하고, 상대의 주장을 잘 들어도, 마지막에는 신청서를 건네지 않고, 상담만으로 귀가를 권하는 것이 유능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업무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보편적인 공적부조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별주의, 제한주의로 변화하였다. 신청서를 건네지 않고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점에 한국제도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제도 시행은 신청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전부 신고하였는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자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므로, 1원이라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혈세주의라고 설명하지만, 「무엇을 조사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의심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신청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결과가 되어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신청자를 조사하는 직권이 있다고 착각하는 담당자들이 많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관공서에 필요한 서류양식이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서류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면, 수리가 되면 신청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선 신청서 제출, 후 상담의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시행령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대로 시행하여야만 할 것이다. 정부와 정부기관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법을 따르겠는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과 법의 정신을 제대로 제도운영에 반영하지 않는 현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래 받아야할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Take-up Rate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현재의 Take-up Rate는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른다. 영국 등에서는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제도에 대한 Take-up Rate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 1970년대에 사회보장연구소의 연구원이 조사를 하였을 때, 일본의 생활보호 Take-up Rate은 24%, 1980년대에 당시 동경도립대학의 호시노씨, 이와타씨가 조사한 결과에서는 24%대, 1990년에 히또쯔바시립대학의 경제연구소가 조사한 시점에서는 10%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Take-up Rate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고 공표도 하고 있지 않다.

넷째, 겨울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거의 없어진다. 일시적▪계절적 빈곤 상태에 처한 실업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시생계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에 대한 조사를 유예한 채 급여를 겨울 동안만이라고 제공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제3강 :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최 영 민(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1.수급자 선정기준

1) 별도가구 인정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으로

<2005년 신설>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는 별도가구로 인정됨. 수급자로 선정된 자 이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처리.

사례)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 중중장애인 미혼자녀 가구(3인 가구)에 아버지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아버지 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907.929원을 초과하여 수급자 될 수 없지만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수급 가능.

120만원(소득) - 802,204원(2인 최저생계비 120%)

=397,796원(부양비산정기준금액) x 40% = 159,118원(간주부양비)

별도가구로 분리된 자녀의 수급액

343,498원(1인 가구 현금급여) - 159,118원(간주 부양비) - 52,988원(임차료)

= **130,732원(현금급여액)**

○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임산부(임신부터 출산 후 **3월**까지)

<2005년 추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자)**

○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004년>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는 별도가구

로 인정**(단, 18세부터 3년간 적용하고 군복무, 재학기간은 제외)**

<2005년 추가>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하는 보장가구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뿐 만 아니라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가구로 특례기준 적용 확대(2004년에는 수급자에게만 적용하였으나 2005년에는 수급권자로 범위 확대)

※ 부양의무자로 간주, 부양비 15% 부과

사례)
☞부모가 장애나 기타 근로무능력자이고(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 딸 소득 10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이므로 수급 받을 수 없었으나, 별도 가구로 인정함으로써 수급가능
100만원(소득) - 481,759원(1인 최저생계비에 120%)
= 518,214원(부양비산정기준금액) x 15% = 77,736원(간주부양비)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생계비
571,978원(2인가구 현금급여) - 77,736원(간주부양비) = **494,242원(현금급여액)**

2)최저생계비

구분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인상액 (%)	33,240 (9.0)	58,662 (9.6)	69,132 (8.2)	81,242 (7.7)	103,281 (8.6)	124,120 (9.2)
현금급여기준	'05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04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인상액 (%)	19,498 (6.0)	35,073 (6.5)	38,357 (5.2)	43,355 (4.7)	58,629 (5.6)	72,639 (6.1)

3) 부양의무자 기준

○<2004년의 경우> 부가급여를 받는 가구의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음

<2005년의 경우>

부가급여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은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가구에서 제외(3인기준 소득인정액 223만원) **부양능력없음의 판정기준 축소**

○<2005년 추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 손서)가구에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2004년도의 경우 부양비 15% 부과)**

> ☞ 결혼한 딸이 사망 했을 경우 사위의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비를 부과 하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양비 부과를 하지 않음.
> 자녀가 있을 경우의 (부양비 부과 15%)
> 사위와 손자 동일가구 일 때 : 사위와 손자 소득을 합산 부양비 부과
> 사위와 손자 동일 가구가 아닐 때 : 사위 소득만 부양비 부과

4) 특례수급자

<2005년> 북한이탈주민 근로능력자가구 일반수급자기준 적용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 **해당기간 만료 후 자활사업 참여의무(2년~5년) 부과** 2004년 까지는 최초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실시

<2005년도 최저생계비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북한이탈주민 적용생계비)	401,466 (668,504)	668,504 (907,929)	907,929 (1,136,332)	1,136,332 (1,302,918)	1,302,918 (1,477,800)	가구원수 1인 증 가 시 마 다 174,882원씩 가산

※ ( )은 북한이탈주민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

☞ 2004년도에는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괄호안의 생계비를 적용하였음.

2. 조사

1) 소득산정기준

<2005년 추가> 환경적응기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중퇴 후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추정소득 미 부과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

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 · **중퇴 · 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2) 실제소득 산정방법

조건부 불이행에 대한 제제 강화

<2005년>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월 13일이상의 추정 임금 적용하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 강화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불이행 시 추정소득금액을 9일 이상(2004년)을 적용하였는데 2005년의 경우 13일 이상으로 적용하여 조건부 불이행에 대한 제제를 강화-임금수준은 근로유지형(2004년의 경우 1일 20,000원 적용함)

2004년 9일 이상 적용 : 최소 180,000만원 부과

2005년 13일 이상 적용 : 최소 260,000만원 부과

3)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공제율 >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
<신설>휴학생 근로소득	**30%**

☞ **<2005년 신설>** 수급자인 학생이 **학비마련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여 소득활동을 할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30%)를 인정.

3. 급여의 실시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1) 현금급여액

현금급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5년	**343천원**	**572천원**	**777천원**	**972천원**	**1,115천원**	**1,264천원**
2004년	324천원	537천원	738천원	929천원	1,056천원	1,192천원
인상액	**19천원**	**35천원**	**39천원**	**43천원**	**59천원**	**72천원**

2) 긴급급여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40.2%)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5년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5년	**161,390**	**268,740**	**364,990**	**456,810**	**523,780**	**594,080**
2004년	149,870	248,210	341,390	429,430	488,260	550,950
인상액	**11,520**	**20,530**	**23,600**	**27,380**	**35,520**	**43,130**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70,300원

3)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

<2004년>근로능력자 가구 는 30만원/구

<2005년 추가>근로능력자 가구는 구당 **40만원,**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장제급여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4)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급여실시

<2004년> ·고교생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10만원), 학용품비(40천원) 지급

·중학생 : 부교재비 28천원(연 1회), 학용품비(40천원) 지급

※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2005년>중학생 : 부교재비 29천원(연 1회)-천원 증액 됨

2005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05년 상반기	2005년 하반기
제1편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p.6 각주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
가정위탁보호 아동(p.8)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신 설>	※ 가), 나)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151쪽)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보완 (p.8, p11)	(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 -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동 규정에 의하여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출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외)삼촌 등)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외)삼촌)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외)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동 규정에 의하여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 예) (외)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외)삼촌 등)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외)삼촌)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외)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 ※ ③~⑩의 경우 ----------, 다만, ⑤, ⑥에 의하여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	※ ③~⑩의 경우 --- ----------, 다만, ⑤, ⑥에 의하여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

	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이하 생략)	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유예(이하 생략)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p.16)	○ 가구원수 산정 :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여 보장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가구원수 산정 :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가구구성원과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근로무능력자(대학생포함)를 가구원수로 산정 ○ 부양의무자의 소득산정방식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부양의무자는 물론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30세미만의 미혼자녀 및 근로무능력자의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p.17, 19)	(나)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대상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손부,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손서,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
	(마)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삭 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p.23, p.24)	(나) 부양비 부과율 30%인 부양의무자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2촌 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형제자매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의 혈족
	(다) 부양비 부과율 15%인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손녀 포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p.23, p.24)	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손부,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손서,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손녀(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에 대한 친정 조부모인 경우도 포함 2)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취업자녀인 경우	이혼·사별한 딸,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삭 제> 2) 취업자녀인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p.25)	(바)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가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 손부) 및 사망한 딸 또는 소녀의 배우자(사위, 손서)로서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등)이 수급권자일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	<삭 제>
농어민가구 특례(p.41)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9조(수급권자 선정기준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제2편 조 사		
가구특성별 지출요인 추가(p.57)	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신 설>	○ 장애인 올림픽에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제5편 보장시설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p.151)	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 사망한 딸의 배우자(사위),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친정부모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 시 재산기준을 고려하지 않음에 유의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p.153)	나.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한하여 조사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최영민(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Ⅰ.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자)에게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해주는 제도(권리적인의미)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 자활지원-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여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 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2.최저생계비

구분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 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최고현금급여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14,789	1,264,419
긴급급여	161,000	269,000	365,000	457,000	524,000	594,000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임차료	52,988	88,233	119,834	149,980	171,967	195,049

* 7인 이상가구: 1인 증가 시마다174,882원원씩 증가

3. 급여의 신청

가.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지침205쪽-208쪽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2)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나. 신청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4조제1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2)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한하여 제출)

(4) 기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4. 보장의 단위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5.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2)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의 동일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취업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동 자녀가 부모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구 내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 이외의 다른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우선,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 보장가구 여부를 판단토록 함. 그 결과 부양의무자와 동일 보장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처리(부모 등으로부터의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그 부양의무자와 별도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처리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아들이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역군인

※ 단,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②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④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⑤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경과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 말소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6.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가) 급여업무 위탁에 따른 별도가구

1)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보장시설수급자)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가) 대리양육 아동

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나)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가구**(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어 부양비 부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포함)중, 그 부양의무자와 법률상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가구원

☞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인 다른 자녀(소년소녀세대의 삼촌 등)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자녀(삼촌)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조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소년·소녀)은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

☞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의 다른 자녀)가 있어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자녀와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아 수급자 선정(예: 다른 형제가 부양능력이 있어서 보호가 안 되는 장애인 자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반가구)

2) **가구전체로는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원 중 다음의 자

①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다음의 자

- ⓐ **65세 이상의 노인(**단,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62세 내지 64세의 노인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자, ⓓ 임산부(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 ⓔ 18세 미만의 자(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이혼·사별한 모·부자가정

②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부부 및 자녀 가구 (모 부자 가정 포함)

※ 단, ①, ②항의 경우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 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66쪽 참조)

③ 출가한 딸 또는 이혼·사별한 딸(자녀가 있는 미혼여성 포함,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④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

⑥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다만, 부양할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함)(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63세 내지 64세의 (외)조부모도 해당)

⑦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⑧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다만, 자녀가 없고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⑨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⑩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 ③~⑩의 경우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수급자로 선정된 자외의 나머지 가구원은 부양의무자로 처리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다만, ⑤, ⑥에 의하여 외손자녀 또는 외조부모가 별도가구 특례로 인정되는 경우 각각의 부양의무자인 외조부모 또는 외손자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조사 유예(이 경우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동일 보장가구원인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자녀를 제외한 자
- 취업자녀를 제외한 가구원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 만성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다만, 취업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 이내(군복무, 재학기간 제외)에 한하여 적용.
- 동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자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자로처리(동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라) 개인단위 보장

(1) 의료비 지출에 따른 수급권자 특례(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포함)
(2)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Ⅱ.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방법(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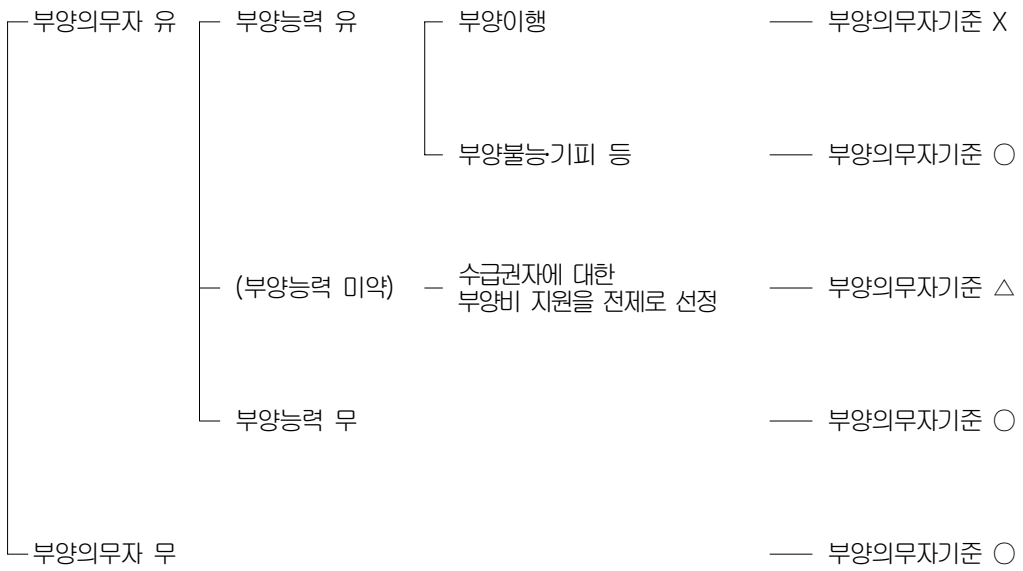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조사>

◦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압류소득은 공제
- 다만, 부양의무자가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다음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이하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보육료, 대학생,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부양의무자가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예: 형제·자매, 삼촌, 조카, 타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방안

▸ 기초공제액 : 수급권자 가구 기초공제액의 2.5배 적용
- 대도시 : 9,500만원, 중소도시 : 7,75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공통으로 적용

▸ 부채 : 수급권자와 동일 방식 적용

▸ 기타 사항 :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300만원) 공제

2.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1)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인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나) 부양의무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다) 부양의무자가 부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이어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
- 부양의무자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 부양수당 또는 보호수당,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중 기타저소득층 제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 기타저소득층 선정기준 :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272만원까지(‘05)

3)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손부,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손서,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친정부모 가구(시행령 제4조제2항)(이하 출가한 딸 등으로 표기)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3]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재산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15%) 산정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단, 출가한 딸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 처리

3) 실제소득에서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할 수 있음. 이하 같음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출가한 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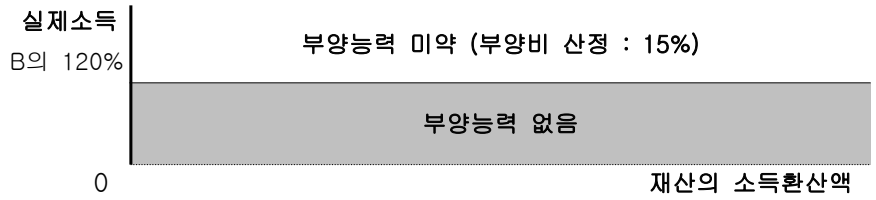

※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4) 재산만을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 또는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 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이고, 일용근로소득 등이 주 소득원인 경우에 한함)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소득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단, 일용근로자 등이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조사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처리하고,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 기준을 적용

5)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 (가)~(다)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중에서 다음의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가목, 제4조제1항 제5호)

(1)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의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인 자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부양능력판정 도해 참고)

6)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하는 경우

◦ 대상

-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 다만, 성년이 된 시점(만 18세)부터 3년(군복무, 재학기간은 제외)에 한함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부양능력 있음 소득구간이 없음에 유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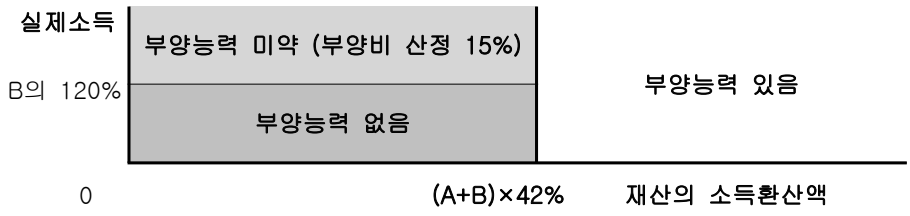

※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7) 재산기준 특례에 해당되어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법 제5조제2항)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 이하
-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
- 가구특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기준 도해(일반/재산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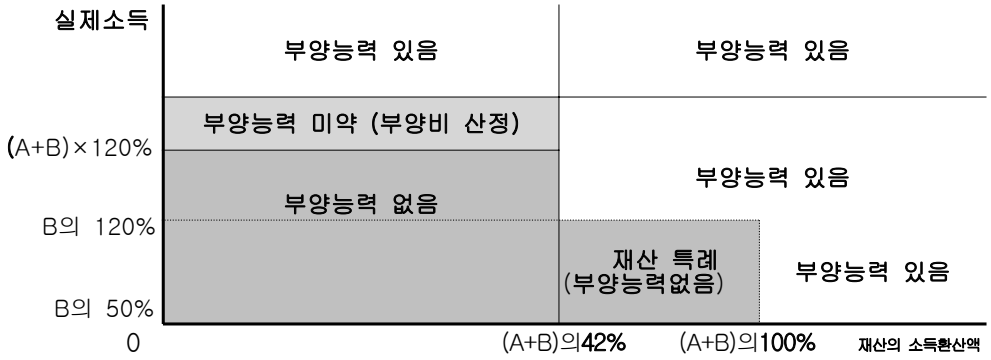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8)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부양비'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타소득(부양비)으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에 반영

◇ 다만,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우선 수급자로 선정·보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3.부양비 부과방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 각 대상별 부양비율

부양비 부과율	40%	30%	15%	부양의무면제자
대상	①부모, 자녀, 배우자 ②위의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①수급권자와 2촌이내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②30세 미만의 미혼의 형제자매	①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이나 며느리, 사위, 손부	①부양의무자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의 가구가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고	*출가한 딸 등 부양비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부양능력 있음 범위가 있음	*부양능력 있음 범위가 있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미약범위만 있음	*기타저소득층제외 *부양능력미약범위만 있음

1) 부양비 부과율이 40%인 부양의무자

(1) 대상자

① 수급권자와 1촌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딸 등 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 제외)

② 수급권자의 배우자

③ ①, ②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120% 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120% 미만인 경우

※ B×120% ≤ 실제소득 < (A+B)×120%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2) 부양비 부과율이 30%인 부양의무자

(1) 대상자 : 수급권자와 2촌이상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단, 출가한 손녀 등부양비 부과율이 15%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제외), 형제자매

(2)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 부양비 부과율 40%인 경우와 동일

<부양비 부과대상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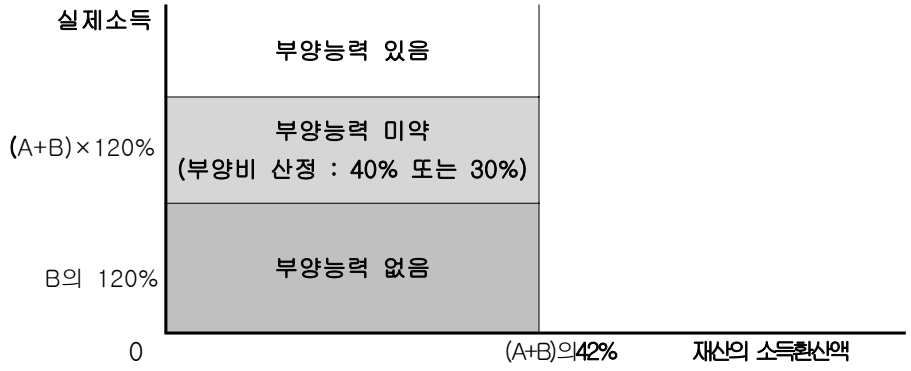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3) 부양비 부과율이 15%인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손녀 포함),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손녀 포함),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손부,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손서, 부양의무자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포함)에 대한 친정부모 가구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손녀(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녀 포함)에 대한 친정조부모인 경우도 포함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 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없음

(2) 부양의무자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에 대한 시부모(며느리가구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함), 취업자녀[4]인 경우

①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120% 이상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②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42% 미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B)×42%

4) 부양비 적용제외 대상자

◦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음

(1) 부양의무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출가한 딸이 친정부모에게, 수급권자인 시부모에 대하여 산정된 부양비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등

(2) 부양의무자가 둘 이상의 수급권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인 출가한 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부양비는 한쪽 가구(시부모)에게만 부과

(3) 중증장애인인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5)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시행령 제5조)

◦ 부양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하여 수급자 선정 가능

(1)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된 경우(군복무)

(2) 해외이주자

(3)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4) 보장시설수급자

(5) 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경과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 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4) 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가구원 중에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의 취업자녀로서 성년 시점부터 3년까지만 적용함

(6) 다음 사항 중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구가 사망한 아들 또는 손자의 배우자(며느리,손부) 및 사망한 딸 또는 손녀의 배우자(사위, 손서)로서 자녀가 없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등)이 수급권자일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
- 기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보장기관이 직접 사실을 확인한 경우

6)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위탁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2)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양자, 양부모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0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 수급권자 가구	부양 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	없음	48	34	80	45	109	55	136	65	156	72	178	79
	미약	48~96		80~128		109~157		136~185		156~205		178~226	
	있음	96		128		157		185		205		226	
2인	없음	48	45	80	56	109	66	**136**	**76**	156	83	178	90
	미약	48~128		80~160		109~189		**136~217**		156~237		178~258	
	있음	128		160		189		**217**		237		258	
3인	없음	48	55	80	66	109	76	136	86	156	93	178	100
	미약	48~157		80~189		109~218		136~245		144~265		178~286	
	있음	157		189		218		245		265		286	
4인	없음	48	65	80	76	109	86	136	95	156	102	178	110
	미약	48~185		80~217		109~245		136~273		156~293		178~314	
	있음	185		217		245		273		293		314	
5인	없음	48	72	80	83	109	93	136	102	156	110	178	117
	미약	48~205		80~237		109~265		136~292		156~313		178~334	
	있음	205		237		265		292		313		334	
6인	없음	48	79	80	90	109	102	136	110	136	117	178	124
	미약	48~226		80~258		109~286		136~314		136~334		178~355	
	있음	226		258		286		314		334		355	

※ 부양능력 판단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수급권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합의 100분의 42’를 비교하고, 부양의무자가구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예시) 수급권자 2인 가구,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100분의 42’ =

(668,504+1,136,332)× 42% = 76만원

○ 부양능력 없음 ⇨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미만

○ 부양능력 있음 ⇨ 소득이 21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이상

○ 부양능력 미약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미만이고) 소득이 136만원 이상, 217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 재산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참고사항] '05년도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단위 : 만원)

부양의무자 가구 / 수급권자 가구	부양능력 판정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소득	재산
1인	없음	48		80		109		136		156		178	
	미약	48~96	10,308	80~128	10,578	109~157	10,819	136~185	11,049	156~205	11,217	178~226	11,393
	있음	96		128		157		185		205		226	
2인	없음	48		80		109		**136**		156		178	
	미약	48~128	10,578	80~160	10,847	109~189	11,088	**136~217**	**11,318**	156~237	11,486	178~258	11,652
	있음	128		160		189		**217**		237		258	
3인	없음	48		80		109		136		156		178	
	미약	48~157	10,819	80~189	11,088	109~218	11,329	136~245	11,559	144~265	11,727	178~286	11,903
	있음	157		189		218		245		265		286	
4인	없음	48		80		109		136		156		178	
	미약	48~185	11,049	80~217	11,318	109~245	11,559	136~273	11,789	156~293	11,957	178~314	12,133
	있음	185		217		245		273		293		314	
5인	없음	48		80		109		136		156		178	
	미약	48~205	11,217	80~237	11,486	109~265	11,727	136~292	11,957	156~313	12,125	178~334	12,301
	있음	205		237		265		292		313		334	
6인	없음	48		80		109		136		136		178	
	미약	48~226	11,393	80~258	11,662	109~286	11,903	136~314	12,133	136~334	12,301	178~355	12,477
	있음	226		258		286		314		334		355	

’05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기준표(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해당 금액 이상 ~ 미만 일때	1인	20	34~80	33	45~107	45	55~131	57	65~154	65	72~170	74	79~188
	2인	20	45~107	33	56~134	45	66~158	**57**	**76~180**	65	83~197	74	90~215
	3인	20	55~131	33	66~158	45	76~182	57	86~204	65	93~221	74	100~239
	4인	20	65~154	33	76~180	45	86~204	57	95~227	65	102~244	74	110~261
	5인	20	72~170	33	83~197	45	93~221	57	102~244	65	110~261	74	117~278
	6인	20	79~188	33	90~215	45	102~239	57	110~261	65	117~278	74	124~296

[참고사항] ‘05년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판정기준표(재산금액 기준)

♠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이 아래 표에 있는 재산금액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단위: 만원)

부양능력 판 정	부양의무자 가구 / 수급권자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소득	재 산
없 음 (소득은 해당 금액 이하 재산은 해당 금액 이상 ~ 미만일때)	1인	20	10,308~11,425	33	10,578~12,066	45	10,819~12,640	57	11,049~13,188	65	11,217~13,588	74	11,393~14,007
	2인	20	10,578~12,066	33	10,847~12,706	45	11,088~13,280	**57**	**11,318~13,828**	65	11,486~14,228	74	11,652~14,647
	3인	20	10,819~12,640	33	11,088~13,280	45	11,329~13,855	57	11,559~14,402	65	11,727~14,802	74	11,903~15,221
	4인	20	11,049~13,188	33	11,318~13,828	45	11,559~14402	57	11,789~14,950	65	11,957~15,350	74	12,133~15,769
	5인	20	11,217~13,587	33	11,486~14,228	45	11,727~14,802	57	11,957~15,350	65	12,125~15,749	74	12,301~16,168
	6인	20	11,393~14,007	33	11,662~14,647	45	11,903~15,221	57	12,133~15,769	65	12,301~16,168	74	12,477~16,588

7)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1) 적용대상자

- 다음의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가구원 중에서 ③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

①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그림 참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 이상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1,2,3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이상 및 150% 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그림의 ㉯ 참조)

- 실제소득은 “질병·교육·가구특성 등에 따른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음

③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 급여내용

- 만성·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해서만 2종 의료급여를 제공

· 다만,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특례“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종으로 계속 보호하고, 또한 생계·주거급여 등 타급여를 지급받고 있을시에는 타급여도 계속 지급(그림의 ㉮-3참조)

(3) 적용시 주의사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그림> ㉯ 및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권을 판단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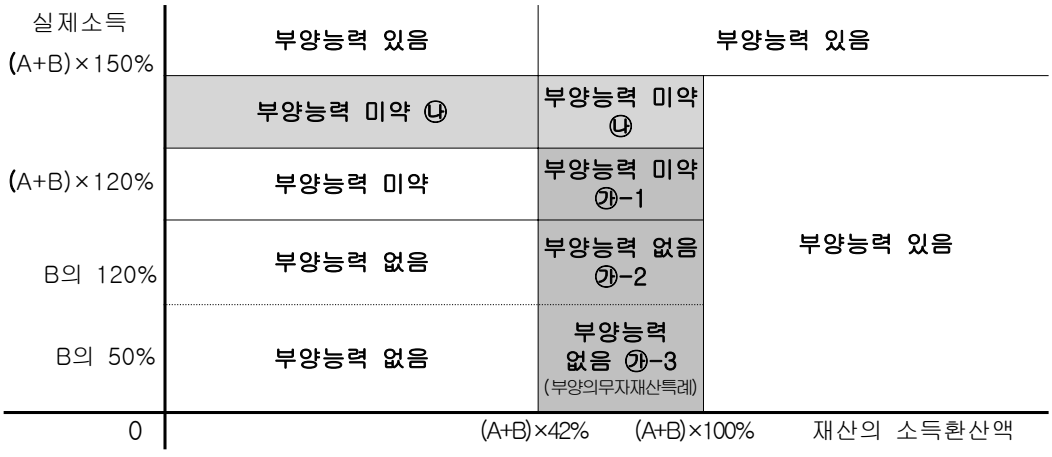

※ A : 수급권자가구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수급권자 특례 조견표>

(단위: 만원)

구 분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B*120%	1인	48		80		109		136		156		177	
	2인	48		80		109		**136**		156		177	
	3인	48		80		109		136		156		177	
	4인	48		80		109		136		156		177	
	5인	48		80		109		136		156		177	
	6인	48		80		109		136		156		177	
소득: (A+B)* 120% 소득환산액 (A+B)* 42%	1인	96	34	128	45	157	55	185	65	205	72	226	79
	2인	128	45	160	56	189	66	**217**	**76**	237	83	258	90
	3인	157	57	189	66	218	76	245	86	265	93	286	100
	4인	185	65	217	76	245	86	273	95	293	102	314	110
	5인	205	72	237	83	265	93	292	102	313	110	334	117
	6인	226	79	258	90	286	102	314	110	334	117	355	124
소득: (A+B)* 150% 소득환산액 (A+B)* 100%	1인	120	80	160	107	196	131	231	154	256	170	282	188
	2인	160	107	201	134	236	158	**271**	**180**	296	197	322	215
	3인	196	131	236	158	272	182	307	204	332	221	358	239
	4인	231	154	271	181	307	204	341	227	366	244	392	261
	5인	256	170	296	197	332	221	366	244	391	261	417	278
	6인	282	188	322	215	358	239	392	261	417	278	443	296

※ A :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B: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예) 수급권자 2인, 부양의무자 4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217만원 이상~271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 부양능력 없음

예)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136만원 이상~217만원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6만원 이상~180만원 미만 ⇨ 부양능력 미약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의료비 지출에 따른 수급권자 특례

(1) 적용대상자

①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②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5]이 7,000만원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2) 급여내용

◦ 의료급여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 **1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6]**
- **2종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해산급여(20만원), 장제급여(40만원) : 특례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유형</th><th>선정기준</th><th>단위</th><th>구분</th><th colspan="2">유형
유형</th><th>선정기준</th><th>단위</th></tr>
<tr><td rowspan="5">1종</td><td rowspan="4">기초생활수급자</td><td>일반수급자</td><td>근로능력무</td><td>세대</td><td rowspan="5">2종</td><td rowspan="5">기초생활수급자</td><td>일반수급자</td><td>근로능력유</td><td>세대</td></tr>
<tr><td>시설수급자</td><td>근로능력무</td><td>개인</td><td rowspan="2">의료급여특례수급자</td><td rowspan="2">74개질환외 기타질환</td><td rowspan="2">개인</td></tr>
<tr><td>의료급예특례수급자</td><td>74개희귀질환
11개만성질환</td><td>개인</td></tr>
<tr><td>2종→1종 세대전환</td><td>74개 희귀질환자가 속한 세대</td><td>개인</td><td rowspan="2">자활급여특례수급자</td><td rowspan="2">74개질환외 기타질환</td><td rowspan="2">세대</td></tr>
<tr><td>기타수급자</td><td>국가유공자,이재민,광주민주화운동,행려환자(개인)</td><td></td><td>세대</td></tr>
</table>

5)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6) 희귀난치성 질환자(98개) 목록 : 부록[2] 참조

나. 교육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실제소득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2) 급여내용

◦ 교육급여 : 해당 학생 개인만 지급

다. 자활급여 특례

(1) 적용대상자 : 수급자[7]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일반수급자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생계·주거급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해당 수급자 가구에 계속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초과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당월 생계·주거급여 지급함

(2) 급여내용

◦ 생계·주거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 참여시는 제외)

※ 생계·주거급여 지급시 전체 가구원수 기준으로 급여액 산정

◦ 자활급여 :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 기간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등을 중지한 달로부터 3년간

◦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도 함께 실시

(3)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에 대한 관리

◦ 자활급여 특례수급자가 다음의 사유로 가구의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다시 일반 수급자 가구로 전환하고 전환된 달부터는 생계·주거급여 등 모든 급여를 재개하고, 조건부수급자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조건을 부여

---

7)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일반수급자도 모두 해당됨

-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
- 다른 가구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활사업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자활급여의 특례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곤란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에 참여해도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4)긴급급여 : 가구의 주 소득원의 질병, 부상, 실직, 가출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선 급여 제공, 후 조사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5긴급급여	161.000	269,000	365,000	457,000	524,000	594,000

2.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6조)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 후 5년의 범위내에서 급여 실시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의 구분기준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한 소득인정액기준을 적용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근로능력가구에 한하여 특례기준 폐지)

<2005년도 최저생계비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소득인정액	401,466 (668,504)	668,504 (907,929)	907,929 (1,136,332)	1,136,332 (1,302,918)	1,302,918 (1,477,800)	가구원수 1인증가시마다 174,882원씩 가산

※ ( )은 근로무능력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기준임.

- 정착기본금 및 장려금·주거지원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정착금·주거지원금의 이자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자동차에 대하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부양의무자기준 : 미적용

◦ 급여방법

- 생계·주거급여는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즉, 1인가구인 경우는 2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2인가구인 경우는 3인가구 기준 생계·주거급여를 실시
  단,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일반수급자와 동일기준 적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 후(2년~5년) 자활사업 참여 의무 부과**
- 특례기준 폐지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근로능력자가구는 최초거주지 전입 후 5년이 도래하는 잔여기간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 인정

나. 일군위안부

-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평가액 산정 후 급여결정
  ※ 생활안정지원금 및 그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에이즈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 에이즈감염자 중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자로서 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고 본인가구(세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

◦ 재산의 소득환산 시 특례적용
- 15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 시 일반재산으로 간주

◦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에이즈감염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에서 정한 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에이즈감염자의 보호차원에서 쉼터 소재를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지에서 급여지급. 다만, 주민등록지의 보장기관은 쉼터 관할 보건소장 또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급권자의 쉼터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관리

라. 농어민가구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한 자가 지급 받은 친환경농업 소득보조금 및 논 농업소득보조금
2)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04. 6. 5 시행)5.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라. 영주귀국사할린한인

마. 한센병정착촌 거주

바.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3.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혜택

제도	신청기관
주민세(개인균등할 5,000원) 비과세	동사무소
주민등록 발급수수료 면제	동사무소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 경감 ·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 · 하수도 : 기본양을 면제	강남수도사업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동사무소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가입비,이전비면제, 월 기본료 면제, 이동전화에 건 요금 30% 감면, ·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월 기본료/통화료 30% 감면	전화국, 이동통신대리점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받은 후 신청)
전화기본요금 월1,00- 1,200원 감면	관할 전화국
TV 수신료 면제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무료간병	동사무소, 병원사회복지사

Ⅳ. 조사

1. 조사의 의의

1)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2)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①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②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④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필요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음

2. 소득조사

1)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활급여의 특례'로 3년간 보호)

◦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등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예 : 연간학비÷12개월)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가.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가)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

② 부양비[8)]

③ 공적이전소득

-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마) 추정소득[9)](신고소득 포함)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가)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나)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10)]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다)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8)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가자의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 제외

9)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10)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에서 차감)

(라).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경로연금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아동양육비
◦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재활보조금
- 다만,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 부담 분 연금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마).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율>

공 제 대 상 소 득	공 제 율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2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소득의 30%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공공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자활)근로를 의미하며, 20만원 초과 추가소득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공동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한 경우를 의미
-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실제소득파악이 우선**

가. 근로소득

1). 개념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북한이탈주민이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기초직업적응훈련 포함)·자활직업훈련·자활취업촉진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중식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훈련수당(월 100천원)은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2).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1) 상시근로자

◦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2) 임시·일용직 근로자

◦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서식2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3)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 파악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조건불이행 기간 동안의 소득을 추가로 파악하여 산정

◦ 다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소득신고서 <서식24호>」를 징구하여 취업 유형별로 근로(사업)소득을 파악하여 반영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가 확인된 경우 등(시행령 제8조제2호)은 조건부과제외자로 변경·관리

나)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

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나.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 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

1). 기타 사업소득

◦ 개념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확인
-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개념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2) 이자소득

라. 기타 소득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예시) 소년소녀가정(2인 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가구 최저생계비 668,504원의 20%인 133,700원을 초과하는 16,300

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자의 집(전세 포함)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 2005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임차료	52,988	88,233	119,834	149,980	171,967	195,049
주거급여	33.000		42.000		55.000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임차료 해당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시행령 제4조1항4호 다목)

◦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 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3) 공적이전소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마.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1)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서식2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2) 추정소득 부과대상

◦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 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추정소득 부과기준

◦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

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4) 추정소득 부과 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 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Ⅴ.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가. 산정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2. 재산의 종류 및 범위

가. 일반재산

(1)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3)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4)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5)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승용차

나. 금융재산

(1)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11)]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 (3년 600만원)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 해약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11)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다. 승용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승 용 차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1500㏄ 미만의 다음 차량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 중 생업용 차량, 장애인사용 2000㏄미만 차량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화물자동차** 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생업용 또는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을 제외)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차량으로 분류됨을 유의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써,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경우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참고사항>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임

(1)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12]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13]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12)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는 3~6급 장애인은 동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13)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 18세 미만의 자
- 65세 이상의 자(다만, 종전 노령기준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인정된 경우에는 62세 내지 64세의 자도 포함)
- 임산부[14](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미만의 여자)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15]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2)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16]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가) 가압류, 경매 상태에 있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나)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이 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 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차감순서 등

-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가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할 수 없음. 동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가구와 동일하게 소득환산제를 적

14) 별도가구특례가 인정되는 임산부의 정의 동일

1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제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

16) 순재산액을 의미함. 즉, 해당가구의 총재산액에서 부채항목과 공제항목(생활준비금 공제는 미해당)을 차감한 금액임

용해야 함.

즉,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2,9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 (600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본재산액, 부채 등을 차감

3. 기본재산액(공제대상 재산가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주거지역별·근로능력유무별 기본재산 공제금액

공제금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 공제금액	3,800	3,100	2,900
근로무능력가구의 기본재산 인정금액	6,000	6,000	6,000
부양의무자 기본재산 공제금액	9,500	7,750	7,250
금융재산공제금액	300	300	300
일반가구 공제금액 합계	4,100	3,400	3,200
근로무능력자가구 공제금액 합계	6,300	6,300	6,300

다.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4. 부채

가. 부채의 종류와 범위

(1)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 의료비부채

◦ 학비부채

◦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2)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 항목으로 처리하고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나.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부채공제 방식

(1)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17]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17)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가구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가구 \ 지역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8,627,482	40,627,482	47,627,482
2 인	45,031,271	47,031,271	54,031,271
3 인	50,772,878	52,772,878	59,772,878
4 인	56,250,168	58,250,168	66,250,168
5 인	60,245,036	62,245,036	69,245,036
6 인	64,438,849	66,438,849	73,438,849

(2)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5.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가.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 유의사항

◦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나.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다. 동산

◦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라. 선박

◦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마. 금융재산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명의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차명계좌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이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급격한 생활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재선정 가능

◦ 이전 금융재산 일제 조사 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 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입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기초생활보장 번호 부여 등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성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자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

2.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가. 보장기관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민간후원단체 등을 “자립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실제거주 사실 확인, 정기적인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함

나. 수급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거주기간 산정 불필요

◦ 지속거주 요건

- 수급자는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다. 급여의 범위

◦ 보호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필요한 일부로 함

라. 관리 방안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주민등록을 복원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보호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타거주지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여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거주지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수급자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 대상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
- 번호의 구성

·지역별 : 시도 및 시군구 및 읍면동명

·남·여 : 남(M), 여(F)

·연령 : ○○세(만 나이)

·부여사유 : 가(말소자), 나(확인불가자 등), 다(실제거주지외 주민등록자)

·자격발생일 : 010328(최초 수급자격발생 연월일)

·식별번호 : 동일번호가 있을 때에는 구분을 위하여 (-) 다음에 일련번호

번호부여 예) 경기과천중앙M36가010328 - 1

- 번호 부여시기 : 급여결정일에 번호를 부여하고 통지
- 번호 활용방법

· 주민등록말소자 등이 신거주지로 이주시에 기초생활보장 번호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거주요건 없이 연결 급여

· 신거주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전거주지를 확인하고 관리카드를 송부받아 계속급여 결정 및 기초생활보장번호를 새로 부여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주민등록법상 주소설정이 어려운 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

나. 보장기관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1) 급여신청 및 상담·조사 단계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실시
- 보장기관(읍·면·동사무소)은 관할지역내에 보호대상자가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 급여신청을 적극 안내
- 관할 지역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보호대상자와 상담하여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실제거주 사실'의 확인
- 보장기관은 보호대상자가 관할 지역내에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예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실조사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 (전화상담 포함)
· 수급권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정기적인 거주사실 신고(예 : 주1회 등)
·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자립후견인 (통·반장, 민간복지단체·시설이나 노숙자 쉼터, 종교단체의 소속인사 등)의 '실제거주사실' 확인 또는 정기적인 상담일지 등에 의한 판단 등

- 최소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거주한 날부터 소급하여 적용

※ 예) 2002.12.2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경우 2003.1.2일에 신청 가능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보호대상자의 급여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제출토록 하여 신원확인 및 소득재산조사 등에 활용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은 수급자격 요건은 아니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청 및 선정 가능함에 유의**

※ 주민등록번호 확인방법 : 본인의 확인, 주민등록 재등록을 통한 확인, 경찰관서를 통한 확인 등

- 보장기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신청 시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주민등록지나 연고지)에서의 수급여부 확인 등 조사 실시
-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주민등록말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가족의 소재지나 연고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조사 의뢰
- 타 시군구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나, 타 시군구로 이동할 의사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장기관간에 상호 보호방안을 긴밀히 협조하여 실제거주지에서만 급여를 받도록 조치(이중급여 방지)

◦ 긴급급여의 활용
-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실제 거주여부(최소거주기간)에 관

계없이 최장 1개월간 긴급급여 가능

(2) 급여의 결정 단계

◦ 급여의 결정
- 전산 및 공부상 입수가능한 자료만으로도 우선 선정 및 급여할 수 있음
  · 선정후 선정기준에 초과하는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급여중지 및 반환절차 실시

◦ 급여결정 통지
- 급여신청 후 30일 이내에 행함
- 통지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
- 수급기간 중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의 일부 및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을 통보**(3) 급여의 실시 단계**

◦ 급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한 급여

◦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통장이 없거나, 술·약물 등으로 탕진할 수 있거나, 월1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을 참조하여 생계비 지급처리
  ·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금전으로 직접 지급(직접 지급하는 경우 <서식 제26호>의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의거 직접확인).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 금전 또는 동일가치(同一價値)의 물품, 식권, 숙박시설이용권, 상품권 등으로 나누어 지급. 월단위가 아닌 주(週)단위로 분할 지급도 가능

(4) 수급자 관리 단계

◦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 급여결정 후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통합조사표'를 작성하여 접수번호 우측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기하고,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별도 관리

◦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 실제거주지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 급여지급
- 실제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제30조의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한 때'로 간주하여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실제거주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의 전부를 중지 (실제거주지에서 수급자격 상실)
  · 지속거주요건으로 급여중지시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미지급

※ 지속거주의 확인방법 : 실제거주(최소거주기간) 확인방법에 준함

◦ 실제거주지 변경시 관리방안
- 실제거주지에서 타 시군구로 이동시 '기초생활보장번호가 부기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타 시군구에서는 '최소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연결 급여
- 타 시군구에서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받은 날을 거주지 변경일로 간주하여 연결 급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해당부분 참조)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사회복지시설 중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미신고시설은 제외)' 입소자는 시설급여 실시

5. 노숙자 쉼터 거주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최소거주기간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자
- 노숙자 쉼터에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는 쉼터거주자도 포함
-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의 갱생보호시설 거주자'도 동일 처리

나.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

◦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보호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

◦ 노숙자 쉼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기준’은 다음을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무료숙식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를 제공
- 다만, 생계급여를 제외하게 되므로 조건부과는 생략(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프로그램은 자율참여)

6. 노숙자에 대한 보호방안

가. 보호대상

◦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 보호방법 및 절차(보장기관간 협조)

◦ 실제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 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토록 설득(급여혜택 설명)

- 일정한 주거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실제거주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여 쉼터나 쪽방 등으로 입주토록 유도하여 보호
- 타 거주지로 이동을 원할 시에는 거주 이전 의사의 확인 및 기초 조사, 이동 예정지 관할 보장기관에 거주이전 예정사실 통보 및 이전 지원

◦ 신 거주지 보장기관 : 노숙자가 노숙자쉼터, 사회복지시설, 일반 주거지, 쪽방 등으로 이전완료의 확인,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실시

※ 노숙자가 실제거주지 관내에서 이동시에는 실제거주지 보장기관이 행함

-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이후의 보호방법 및 절차는 앞의 ‘3~5항‘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
- 다만, 급여기준은 다음을 감안하여 적용

· 신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은 노숙자가 신거주지로 이동한 즉시 우선 긴급급여 실시

· 긴급급여 실시 후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앞의 ‘3~5항’에 해당되는 급여기준을 적용

7. 취약계층별 급여 형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방안 총괄>

구 분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쪽방 등 거주자	노숙자쉼터 거주자			노숙자
				주민등록설정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확인불가자 등	
				쉼터소재	타지소재		
관리 수단	실제거주요건 (급여신청시)	최소 **1개월** 거주	최소 **1개월** 거주	-	최소 **1개월** 거주		-
	지속거주요건 (수급기간 중)	지속 거주 사실 확인	지속 거주 사실 확인	-	지속거주사실확인		-
	기초생활보장번호 (거주지 이동시)	번호부여	번호부여	-	번호부여		-
급여	생계	○	○	×	×		×
	주거	○	○	×	×		×
	의료	○	○	○	○		×
	교육	○	○	○	○		×
	해산	○	○	○	○		×
	장제	○	○	○	○		×
	자활 조건부과	○	○	×	×		×
비고	생계급여방식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	현금/물품/ 분할지급가능		이동시 긴급급여

제4강 : 기초생활보장법 상담사례 및 상담기법

상담사례로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류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 교육실장)

사례1)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담자 : 임00의 경우(43세, 여, 4인 가구, 모자가정)

■상담내용)

내담인은 디스크와 당뇨로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임.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 비닐하우스 거주. 딸3명(27세, 18세, 16세). 성인이 된 딸이 있다는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수급을 거부하고 있음.

소득, 재산, 자동차: 없음, 부채: 5천만원

맏딸은 현재 집을 나가 소식이 없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친구집을 떠돌면서 생활한다고 함.

■문제점 : 1.딸의 근로능력

2.클라이언트의 근로능력

■처 리 : 딸을 가구분리하거나, 딸을 가출신고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제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상담해 주어야 함

1.딸의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1.2번 두 가지 방법 사용 가능

① 딸→ 가구분리 :가구를 분리하면 딸은 신분상의 위치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로 됨

② 딸의 가출 신고 : 실제로 딸이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실정이므로 수급신청이 가능함

2. 클라이언트 본인의 근로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기간이 명시-최소 3개월 이상)를 제출하여 근로무능력 증명

■상담결과: 이 가구는 딸이 실제 가출한 상태 였으므로 딸을 가출 신고하고, 내담인의 진단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명시)를 첨부하여 1개월 후 수급 신청함.

3인가구 현금 최고 급여 776,833원을 받게 됨.

사례2)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담인:김 00(72세. 여.1인가구), **소득** : 없음, **재산** : 없음

부양의무자: 아들1(뇌출혈 입원, 며느리-소득:130만원, 손자(고1), 재산8천만원), 딸1(남

편이 일용근로자임, 4인 가구, 소득:130만원, 재산:5천만원)

■상담내용

할머니가 할머니의 친정 올케집에서 얹혀서 살고 있다.
부양의무자로 아들과 딸이 있다.
아들은 뇌출혈로 병원에서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고, 딸은 남편이 일용근로자이고 4인 가구에 소득이 130만원이며 재산은 5천만원(서울거주)이 있다.
며느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130만원을 벌고 있고 고등학생자녀가 1명 있다.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지 ?

■ 문제점 : 없음

■ 처 리 : 부양비 및 무료임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음
아들 : 부양비 적용 제외 대상자(며느리는 중증장애인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므로 부양능력없음으로 인정 가능함)
딸 : 출가한 딸은 소득으로만 부양능력측정.
딸 가구의 소득이 130만원으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의 120%인 135만원 미만 이므로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임.

■ 상담결과 : 할머니는 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주거급여(1인:33.000원)을 소득으로 보고, 1인 가구 현금 최고 급여 343.000원에서 주거급여를 뺀 313.000원을 생계비로 받음.

식:343.000(1인 최고 현금급여) - 33.000(1인 주거급여)=313.000

<u>사례3) 본인의 근로무능력 증명 및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u>

내담인 :이 00(39세, 여, 공항장애, 미혼), **가족사항**: 단독가구, **소득**: 없음,
재산 : 없음,
부양의무자: 부,모-소득 : 없음, 재산: 1억 1천만원

■상담내용

내담인은 공항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현재 수입도 없고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단서를 끊으려고 해도 정신과 의사 상담비용만 해도 1회에 15만원이 넘을뿐더러, 공항장애의 경우 병원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차를 탈 수 없어서 병원을 가는 것조차 힘들고, 이에 따라 취업도 힘든 상태이다.
근로능력자라고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하고, 부모(부양의무자)의 재산(시골의 집과 밭-1억 천만원)으로 인해 진단서를 첨부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자녀들이 8명이고, 재산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서 내담인에게 줄 수 있는 것

이 없는 상황이라 너무 허탈하고 제도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방법이 없는지?

■문제점 : 1.클라이언트의 근로능력
2. 부양의무자(부모)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 다 충족하여야 함.

■처 리 : 1.본인의 근로무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필요 함.
2.시골부모님의 재산은 기본공제액 7,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액 중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부양비를 산정 하는 것이 원칙임.
이 경우 재산 1억천 만원은 수급자가구 1인 부양의무자 가구2인으로 재산이 8,328만원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 범위에 들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부양의무자가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표 참조)

■ 상담결과 : 이 사례는 본인의 근로 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있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케이스임.

이런 경우
①부양의무자재산이 명의 이전되거나,
②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부채(대출)가 증가 하거나,
③의료비 지출 등 지출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산 가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또 수급자 자신의 근로무능력 부분의 경우 사실조사 복명서나 보장기관에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본인의 근로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사례4)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담인: 양00(여,89세, 2인 가구), **가족상황**: 장애2급 아들(40세),
소득: 없음, **재산**: 5천 8백만원
부양의무자 : 아들2(아들 사망, 며느리혼자서 살고 있음). 딸1(남편이 은행원, 소득 4백5십만원, 자녀2명-대학생 딸 1명, 고등학생 딸1명,), 딸2(5인 가구, 소득230만원, 시어머니 모시고 삶)

■상담내용
내담인은 89세로 정신지체2급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아들이 정신지체라서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고, 교회에서 10만원을 도와주고 있지만 전기요금도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신청을 하였더니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딸의 부양능력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들이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한테 손 벌리기도 그렇고, 며느리가 잘살지도 않는다.
딸들도 자기들 사느라 바쁜데 엄마를 도와달라는 말이 차마 안나온다.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 1.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의 부양능력문제
2.딸1의 부양능력 문제
3.딸2의 부양능력 문제
4. 재산문제
5.사적이전소득 100.000원

■처 리 1.사망한 아들의 배우자가구에 자녀가 없을 경우(특례규정)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음.-부양의무자기준 충족
2.딸1의 부양능력문제 : 딸 가구의 소득에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를 빼고 대학생 및 고등학생자녀 교육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15%가 부양비 임
식:4,500.000-2,090,000(1,360,000+730,000)×15%=**361,500원의 부양비**가 산정됨
3. 딸2는 부양능력미약범위에 들고,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다른 한쪽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부양비 적용 제외 대상자임.
4. 가구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급권자 재산특례규정이(가구원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환산률이 100%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 기본재산공제액 60.000,000 원) 적용되는 가구여서 재산기준 충족함.
5.사적이전소득(교회에서 도와주는 돈 100.000원)은 최저생계비의 20%를 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상담결과 : 내담인 2인 가족 최고현금급여 57만원 중 딸의 부양비와 제3자의 집에 거주하는 주거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 176,500원을 받을 수 있음, 여기에 장애수당 6만원을 부가급여 로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식: 571,000-(361,500+33,000)=176,500원 + 장애수당

사례5) 재산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내담인: 정00씨(80세, 남), **가족사항**: 4인 가구
(할아버지:80, 할머니:80, 아들:40 손자:12세)
소득:1,100,000원
재산: 싯가 2억원의 산동네 여관(현 싯가 2억원이라고 하나 개발제한구역이라 부동산에 팔려고 내 놓아도 거래가 중단되어 팔 수 없음)
부양의무자 : 아들, **자동차** : 없음

■상담내용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신지체아들(정신병원에 입원 중)과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이다.
산동네 허름한 여인숙을 운영하여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인숙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손자를 돌보는 일도 힘들어서 여인숙을 팔려고 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팔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서 여인숙도 손님이 없어 소득이 110만원정도 되나 아들의 병원비(50만원)나 여인숙의 기름값(한달50정도)제하면 살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게 되니 100만원 정도 고정지출이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겨워 수급신청을 했으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상담사가 손자를 개별보호 하도록 동사무소에 중재했으나 부양의무자(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손자도 개별보호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제점 : 1.클라이언트의 재산 기준초과

■처 리 : 1. 클라이언트의 재산은 시가 2억이므로 기본재산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수급 자가 될 수 없음.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이미 중증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아들이 질병으로 손자를 부양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10조에 의거 위탁아동양육비 및 손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음 (개별보호)
이 경우 할아버지 집에 거주하는 임차료만 빼고 나머지를 생계비로 받을 수 있음.
클라이언트 손자를 길러주므로 위탁아동양육비 7만원을 받을 수 있음

■상담결과:343,498원(1인 가구 최고 현금급여)-52,988원(부양의무자 가구에 무료로 거주하는)= 290,510원+7만원(위탁아동양육비) 받음.

사례6) 부양의무자재산의 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경우

내담인: 이 00(30세, 남, 장애1급)
가족사항: 2인 가구(본인, 부인:28세 둘 다 뇌성마비 장애2급)
소득: 없음. **재산**: 없음
부양의무자: 부, 모, 재산 있음(수원 33평 주거용 아파트, 시가 1억5천 추정)
자동차: 없음

■상담내용

장애2급 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도로 담배꽁초 줍는 환경미화)를 해서 5-60만원을 받아서 살고 있었으나 공공근로가 종료 되어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제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되었고, 아내도 뇌성마비 장애2급이라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힘든 상황이다.
동사무소에 수급신청 했더니 부양의무자(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

■ 문제점 : 1.부모의 재산

■처 리 :1.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부양능력 있음 범위이나(수급권자2인 부양의무자2인일 경우9,098만원 이하여야 함-중소도시) 부양의무자재산의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담결과 :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 시 부양의무자의 부채(집을 담보로 6천만원 대출 받은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천만원으로 재평가 됨)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되어 2인 가구 최고 현금급여 571.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었음.
장애수당 12만원(2명)도 부가급여로 받을 수 있었음.

사례7)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내담인 : 최 00(34,남, 지체장애2급)
가족사항 : 3인 가구(내담인, 부인-31세, 자녀(1살))
소득: 내담인 혼자 수급자(310.000원), **재산**: 3.000.000원, **부채** : 없음
자동차 : 없음

■상담내용

현재 내담인은 부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으면서 혼자서 수급을 받고 있었다.
장애인이라 취업도 할 수 없는데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의 소득(교사)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인은 교사로서 4백만원의 소득이 있고, 가족은 부인, 자녀가 3명(내담인의 부인은 제외)이고, 자녀들은 대학생2명 및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부인인 딸은 신용불량자가 됨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 난 상황이라 왕래조차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동사무소 복지사에게 말했으나 장인도 딸의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안했으면 몰라도 혼인신고를 한 이상 부인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인으로 인해 수급을 받을 수 없다면 부인과 다시 이혼을 해서 혼자라도 수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부인과 아이, 장애인인 내담인의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해 왔다.

■문제점 1. 장인의 부양능력문제
2.부인의 근로능력문제-미취학 아동 보호자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가능

■처 리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1. 부양비를 부과받고 수급받는 방법
장인가구의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액을 뺀 후 장인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를 공제하고 뺀 나머지의 15%를 부양비로 산정함.
식:4.000.000-1,320,000(가구특성별지출액)-1,562,000×15%=167,700원

※부양비 부과 15%인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미약, 부양능력 없음의 범위만 있고 부양능력 있음의 범위는 없음

2.가족관계단절을 증명하여 수급을 받는 방법: 장인 및 딸의 거주지 통반장 및 이웃주민들에게 부모자식간의 왕래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두가지의 방법 중에서 생계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장기관이 가족관계단절을 잘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상담결과: 3인 가구 현금최고급여에서 장인의 간주부양비를 뺀 금액을 생계비로 받음
※3인 가구 현금최고급여 770.000-167,700=602,300원 받음.
여기에 장애수당 6만원을 부가급여로 받을 수 있음

사례8) 사적이전소득을 잘못 적용한 경우

내담인 : 이 00(80, 남, 4인 가구(조손가구))

가족상황: 4인 가구(내담인, 부인(73), 손자, 손녀), **소득**:100만원,
재산 :아파트 보증금 6천만원, **부채** : 없음,
자동차 :개인택시(생업용, 할부로 구입-사위가 사줌)
부양의무자: 아들1(행방불명). 아들2(2인 가구, 가구의 소득250만원, 재산:7천만원),딸 : 뇌졸중(중환자실 입원한 상황임), 사위가 보일러공으로 급여2백만원 받음, 4인 가구)

■상담내용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손녀 둘 을 데리고 사는 조손가구이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이후에 가출하여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고로 인하여 할아버지는 사위가 사준 개인택시(현대캐피탈 대출, 월33만원 할부로 구입함)를 운전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고령인데다가 허리디스크(진단서첨부가능)로 3일에 1일정도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일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이 무리라서 100만원 정도도 못 버는 실정이다.
할머니는 월8회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여 한달에 4만5천원 버는 일을 하였으나 유방암으로 현재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

■문제점

1.전체가구로 수급신청 시 수급받을 수 없음

2. 개별보호 이후 생계비가 적정치 못함.(사적이전소득 적용의 문제)
아이들만 개별보호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제공받는 사적이전 소득을 40만원 적용하여 생계비를 83,000원 지불하고 있었음

■처 리 : 가구 구성형태(조손동일가구나 아이들만 개별보호형태를 취하거나)에 따라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가구구성형태를 취하도록 조언하여야 함.

1. 손자들만 개별보호 가능한 지침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촉구함.
-아들을 행방불명으로 관할파출소에 신고하고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므로 임차료가 소득으로 산정 됨.
-위탁아동양육비 14만원 부가급여로 받을 수 있음
※2인 가구 현금급여-임차료+위탁아동양육비
571.000-88.000+140.000=623,000원

2.부양의무자에게 소비지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쓰라고 말함,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할머니가 많이 쓰면 많이 주는 줄 알고 200만원이 한달에 아이들한테 쓰인다고 적음,
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80%를 깍아 준다면서 40만원을 아이들에게 지원한다고 적용함.

-소비지출 실태조사 시 조사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

-부양의무자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소득의 부양의무자가 할부금(33만원)을 갚고, 의료비(10만원)에 지출하면 본인가구의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40만원의 사적이전 소득을 적용한점에 대해 부당심사 청구함.

■상담결과

481.000원의 생계비 및 위탁아동양육비 14만원을 받게 됨

※아이들만 개별가구로 보호받을 수 있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상담시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수급권자를 돌려보낸 케이스임.
본 상담실과 상담이후 아이들이 개별보호 되었으나 사적이전소득을 잘못 적용하여 생계비를 터무니없이 작게 적용해서 덜 줄 케이스임.

사례9)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내담인: 진00(74세, 여), **소득:** 없음. **재산**: 없음, **부양의무자**: 아들1명, **자동차**: 있음

■상담내용

아들이 사업을 하다 수급자가 될 실정이 되었다.
아들의 자동차가 수급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인 내담인에게 자동차를 이전시켜 놓았다.
이에 따라 내담인도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때문에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차가 압류된 상태라도 팔면 압류된 금액을 공제하고 50만원정도 매매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50만원을 할머니의 월 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동사무소의 해석이었다.
도움 받을 길은 없는지?
(자동차는 소득환산률이 월 100%임)

■문제점 : 압류된 자동차

■처 리 : 압류된차는 일반 재산환산율인 4/17%로 환산함
자동차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예) 보험가액 200만원일 경우=8만7천의 소득으로 환산
소득으로 환산된 8만7천원을 제외하고 생계비를 받을 수 있음

■상담결과

1인가구 현금최고급여 343,000-87,000원=256,000원을 받게 됨

사례10)장애아들의 근로능력으로 인한 추정소득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경우

내담인: 이 00(62세, 여), **가족사항:** 4인가구, **소득**: 60만원 ,
재산: 10.000.000원, **부양의무자** : 없음, **자동차** : 없음

■상담내용

4인가구로서 남편은 66세로 알콜중독 증세가 심한상황이고, 내담인은 파출부로 60만원 받아서 4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아들1명(36세)은 정신장애를 15년 동안 앓고 있어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한 상태이다.

장애가 5급이긴 하지만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대인기피증세가 있어서 취업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둘째아들은 현재 장애 2등급(32세)을 받은 상황이라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가능한데 큰아들은 장애등급이 5급이라 동사무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내담인의 소득60과 아들의 추정소득 60만원을 잡아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4만원초과)이라서 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살길이 막막하다.

■문제점 : 장애5급인 큰아들의 근로능력으로 인한 추정소득 부과

■처 리 : 두가지 방법이 있음

1.가족 중 한명(장애5급인 큰아들)을 중증장애인의 간병인으로써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고 어머니의 소득 60만원 중 전가족의 의료비를 공제한 후 수급 받는 방법.

2.장애5급 아들 조건부 수급 신청 하도록 하는 방법: 조건부 수급신청을 하면 보장기관이 조건부 수급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하는 경우 자활사업단 등 학력, 장애등으로 조건부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조건부과유예자로 수급이 가능함.

■상담결과

정신장애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가구원 중 1명을 근로무능력자로 판정해주지 않는 상황임.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조건부수급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신청했으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추정소득부과자가 아님. 이에 따라 4인가구 최고 현금급여 972,000원에서 소득60만원을 제하고 의료비(10만원)를 공제 받아서(영수증 제출) **472,000**원의 생계비를 받게 됨.

큰아들 장애수당 2만원과 작은아들 장애수당 6만원도 부가급여로 받음.

※장애 5급은 근로능력자로 구별되지만 스스로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것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지하도록 만든 케이스임.

사례11)근로능력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내담인: 이00(40세, 여, 신용불량자, 단전, 단수 상태임, 4인 가구)

가족사항: 남편(43세, 우울증 시초, 자녀 초3학년, 초6학년)

소득: 일정치 않음(보험설계사), **재산**:4천만원
부양의무자: 시부모(70세, 65세, 재산 7천만원), 친정부모(기초생활수급자)

■상담내용

총 가스비 50만원, 핸드폰요금 60만원, 전기 15만원, 수도 13만원 총 138만원 빚이 있고, 의료보험료 총 6~7개월 밀려 있음. 병원도 못 감.
핸드폰 거는 것은 안 되고 받을 수는 있으나 곧 끊길 예정,
가스 끊긴 지 2주일 됨.
수도는 끊겨도 약수터에서 물을 먹음. 물 길러 오다가 남편이 발을 다쳤음.
생활고 겪은 지 5~6개월 되었음.

남편은 우울증의 시초, 자포자기, 개에게 정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개를 버릴 수도 없음. 개의 이름은 희망,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됨.
남편이 호프집에서(저녁 6시~새벽 6시까지 아르바이트), 낮에는 놀고 있음. 부인은 현재 보험회사에 교육 중 점심때만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안 됨.
부인은 스트레스 종교로 버팀.
카드값: 2001년 7월 '000의 그림교실' 본부장이 되기 위하여 2천만원 카드빚으로 비디오와 책을 사는데 투자, 승진을 위하여 무리하게 투자했으나, 반납을 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남편도 그 시점에서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었음.
현금서비스 받아가며 돌려 막기, 카드가 총 남편 8개, 내담인 8개
수급신청을 하였더니 근로능력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함.

■문제점 : 두 사람의 근로능력 / 남편의 증상으로 장애진단은 어려울 것 같음.

■처 리 : 방법1.취업하기 어려우면 부인이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참가
방법2.남편이 발을 다친 것이 진단서 제출가능하면 제출하여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도록
방법3.수급자가 되지 못할 경우 복지재단이나 복지관등에 다른 지원 (단전 단수비용 등)을 지원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함.

■상담결과: 이 사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된다는데 대해 수치심을 보이는 상황이였고, 부인이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어서 조건부 수급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남편의 경우 질병의 정도가 외형적으로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기 어려워(본인이 정신질환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함) 복지재단을 통해 단전 단수 비용 70만원을 지원하였음.
상담이 종료될 시점에는 전세비용을 생활비 및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 월세로 이사를 갔고, 아이들도 학교를 전학하는 등 아이들도 대인기피증상을 보이는 상태였음.

※중류층이 IMF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한 케이스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카드 빚 등으로 일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빈곤함으로 인해 근로의욕상실, 정신질환 발생, 가정해체 등으로 이어지는 근로빈곤층으로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등 빈곤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케이스임.

사례12)제도를 몰라서 수급 받지 못한 경우

내담인: 김00(40세, 여, 유방암 말기)
가족사항 : 3인가구:남편(44세) 장애6급 -교통사고 왼손장애, 알콜중독,
아들: 초등학교3학년)
소득: 없음,
재산 : 아파트(7천5백만원), **부채** : 은행융자(4천만원)
부양의무자 : 시부모(장애아들-정신지체 1급과 같이 거주, 소득: 없음, 재산: 2천만원)

■상담내용

남편은 돈 구하러 가서 아직 집에 오지 않는 상태, 내담인은 간질, 유방암으로 수술 후 수술비조차 없음, 병원에서는 돈이 아까워 식사도 먹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병원비도 수급자가 아니므로 천만원 밀린 상태임.
아이는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 있어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서 식사를 굶는 등 방치된 상태여서 주변에 이웃이 너무 안타까워 도와줄 길이 없는지 의뢰한 케이스.

■문제점 : 1.남편의 근로능력문제

■ 처 리 1.남편이 실제로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으므로 가출신고를 내도록 한 후 수급신청하도록 함.
2.부양의무자 가구도 수급 받도록 알려줌 (정신지체 장애인인 아들의 장애수당 6만원을 부가급여로 받을 수 있음)

■상담결과

2인 가구 최고현금급여 571,978원을 받게 됨.

※이 케이스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정보부재를 잘 나타내어 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상담건수의 40%이상이 기초법이 있는지? 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그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다보니 생계비나 기타 공공부조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의외로 생존의 벼랑에서 구제될 수 있었던 케이스다.
이 가구는 의료비의 지원이 너무 시급해서 상담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긴급한 대처

와 공조가 잘 이루어 져서 수급신청 4일 만에 수급자로 선정되고 의료비 지원도 받게 되었다. 아동의 경우 주변에 복지관 등하교 이후 보호할 곳이 없어서 지역의 종교단체의 관계자가 아이를 돌봐 줄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자원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진 케이스다.

사례13) 추정소득부과가 잘못된 사례

내담인 : 김00(46세, 여,)

가족사항 : 모자가정(4인가구)

내담인 46세, 자녀1(10살), 자녀2(10살 쌍둥이),자녀3(14개월)

소득 : 없음

재산 : 전세보증금 15.000.000원 월세 400.000원

부채 : 10.000.000원(은행 빚)

부양의무자 : 없음, **자동차** : 없음

■상담내용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 엄마이다. 막내가 14개월이라서 일을 하지 못한다.

4,500만원의 전세를 살 때 40만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크고 해서 먹고 살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악세서리를 만들어 팔았다.

1달 수입이 고작 2-30만원이었는데 그나마 막내 아이를 돌봐야 하고 경기도 나빠져서 현재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서 2003년 중순부터는 전세금을 빼서 생활하여 지금은 전세금이 15.000.000원 밖에 남지 않았다.

수급액을 좀 더 달라고 겨우겨우 자존심 상해가며 말을 붙였는데 조금 더 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이 많아질 거라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이야기 하면서 2004년 6월에는 42.000원 주었고 7월에는 120,910원, 8월에는 7만원을 받았다.

어린 복지사랑 싸움하기도 그렇고, 말을 붙이면 막내자녀의 출산 등(위의 두 아이와 아버지가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등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혼 등)을 물어보아서 자존심을 상하게도 하고, 구걸하는 것 같아 동사무소에 가는 것을 포기 하고 있었음.

아이를 보살펴야 하고, 소득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집 보증금4천5백만원은 2년도 되기 전에 바닥이 나서 월세도 대지 못해서 쫓겨 나야 하는 지경이다.

생활이 어려워 죽고 싶은 생각뿐인데 아이셋을 두고 죽으려니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

■문제점 : 추정소득을 과다 부과함

■처 리 1.소득신고를 다시 하도록 함.

2.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는 근로무능력자임을 인정하는 지침을 적용하도록 촉구함.

■상담결과

생계비를 7만원 받던 것을 972.256원 받도록 됨.

※미취학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구원 중 1명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건부 수급을 강요하거나, 13개월짜리 아동을 12시간 보호시설에 보낼 것을 요구하고, 근로능력자 인데 조건부 수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추정소득을 적용하거나, 터무니없는 소비지출실태조사를 하여 사적이전소득을 엉터리로 적용하는 등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 임.

사례14) 재산기준특례를 잘못 적용한 경우

내담인 : 박00(66세, 노인단독가구)
소득: 없음, **재산**: 4천9백만원, **부채**: 3백만원
부양의무자: 없음(전처소생의 자녀 1명 있으나 연락 두절된 지 오래됨)
자동차 : 없음, **사적이전소득** : 성당에서 월10만원 도움 받음

■상담내용
생활이 어려워서 동사무소에 갔으나 재산이 기본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수급신청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음
일자리가 없어서 일도 할 수 없을뿐더러, 건강(천식, 관절염)으로 일을 할 수 없음.
방도 냉방이라 죽고 싶은 심정임.

■문제점 : 근로무능력자가구의 재산기준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처 리 : 근로무능력자의 재산기준은 6,000 만원임

■상담결과
수급탈락에서 수급자 됨.

사례15)개별보호가 가능한 경우

내담인: 한00(47세, 여, 미혼)
가족사항: 조카 2명, 소득:50만원, 재산: 동생집에 거주
자동차: 1.500 CC 아반떼

■상담내용
내담인의 남동생이 2000년부터 행방불명된 상태임
올케는 둘째 조카를 낳은 직후 이혼 동생도 아이들을 보살피지 못해 고아원에도 보내지

못하고 조카(5살, 8살)를 보살피고 있다.
내담인은 틈틈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50만원의 소득이 있음.
동사무소에 갔으나 고모가 보살피므로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살길이 막막하다.
이 사례는 1차 상담 시 아이들 개별보호와 더불어 위탁아동양육비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아이들 개별보호와 부가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위탁아동양육비에 대해 알고 있지도 못해서 재 상담을 5번 한 케이스임.

■문제점 : 없음

■처 리 : 동생 가출신고 후 수급신청함.
이 경우는 어떤 가구형태(고모와 아이들을 동일가구로 하거나 아이들만 따로 가구 구성을 하거나)를 취하면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상담을 해 주어야 함.

■상담결과
2인 가구 현금최고급여+위탁아동양육비-부양의무자가 아닌 제3자 집 무료임대소득 33,000원 공제 후 678,978원의 생계비를 받게 됨.

식: 571,978+140.000-33.000원=678,978원

※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침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대로 된 지침적용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케이스 임

사례16) 수급액이 적정치 못한 경우
내담인: 신00 (53세, 여, 근로능력자), 수급자임, 수급액: 40만원
가족상황: 남편(정신과 치료 중 63세), 딸 (과대망상, 정신분열로 치료 중)
소득 : 연금 140.000원
재산 : 남의 땅에 지은 9평 무허가 집
금융재산 : 2000년 9월 5.000만원 이였으나 그동안 병원비로 탕진하여 없음.
(월 평균 80만원 정도 지출)
5.000만원의 년 이자 4%= 200만원(월 166.000원)

■상담내용
남편과 자녀가 모두 정신병자라서 살기 힘들다. 돈을 벌러 갈 수도 없고, 시골에서 남의 땅에 채소나 길러서 먹는 형편 인데 너무 힘들다.
동사무소에서 40만원 받는데 더 도움 받을 길은 없는지

■**문제점** 1.부인의 근로능력
2.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3.개인연금 140.000원

■**처 리** **1.환자의 보호자로서 근로무능력자로 인정가능**
2.최초수급시에 산정된 금융재산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동안 지출한 금융재산의 사용처를 증명하도록 함(그동안의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조정신청)
3.현재 받는 연금은 공적이전 소득으로 산정됨.
4.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소득에서 가구특성지출액으로 인정가능

■**상담결과**

3인가구 최고현금급여에서 연금으로 받는 소득을 차감하고 636.833원을 수급받게 되어서 생계비가 236.833원 증액됨.
장애진단 시 장애수당을 부가급여로 받을 수 있어서 장애등급을 받도록 함.
776.833-140.000=636.833원 수급 받게 됨,

<u>사례17)친정아버지 재산을 문제 삼는 경우</u>
내담인: 유00 (48세, 여)
가족상황: 자녀2(중2, 고3)
소득: 없음
재산: 3천5백만원(중소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친정부모(재산 2억)

■**상담내용**
식당에서 일하였으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음.
아이들도 어리고 살기가 힘들어서 수급신청을 하였으나 친정부모 재산으로 수급 받을 수 없다고 함. 방법은 없는지?

■**문제점** 1.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수급에 문제없음.
2.내담인의 근로능력.

■**처 리** 1. 친정부모는 재산기준이 아닌 소득이 기준임 / 친정부모의 재산에서 임대료가 발생한다면 임대소득에서 부모님의 생계비의 1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5%가 부양비로 산정 됨 .
2.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서 첨부

■상담결과

1. 3인 가구 최고 현금급여 776,833원 받게 됨.

※지침에도 없는 규정을 이야기 하며 수급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임. 친정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예측을 수급거부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케이스임. 또한 이 지침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고 있어 보호받아야 마땅한 저소득 빈곤계층이 전담공무원의 무지 및 지침적용오류로 보호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보장제도 상담 기법

류 미령(한국빈곤문제연구소 상담, 교육실장)

사회보장제도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특히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1)법이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2)내담인의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꼽을 수 있다.

법이나 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방법 제시로 내담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조정, 중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 전반에 흐르는 기본정신이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만이 성공적인 조정 , 중재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숙지하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전화 응대법

1)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한다
2) 상담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3)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린다.
5) 필요에 따라 상담기법을 사용한다.
6)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며 확인 한다
7) 내담인의 욕구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8)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보통속도 빠르기로 또박또박 말한다.
9) 먼저 전화번호와 이름 등 내담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것을 삼가하고, 조정, 중재 등을 위해 연락처가 필요함을 알리고 양해를 구한 후 가급적 빠짐없이 기입한다. (밝히길 꺼려하면 기재하지 않아도 됨)

2. 상황별로 필요한 상담기법

1)상담의 기본전략

(1) 내담자의 상황이나 현실, 바라는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2) 일반적이고 모호한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중한다.
(3)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내용에 주목한다.
(4)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수용, 반영, 등 상담기법을 통해 라포를 형성한다.
(5)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2) 상활별로 필요한 상담기법

(1)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관계나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화가 나 있거나, 정부의 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화를 한 경우

① 공감적 반응…공감은 내담자가 경험한 정서를 같이 경험함을 의미하며 동감이나 동정과는 다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느낄 뿐 아니라 이해하고 느낀 감정을 내담자에게 말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

② 안심화…넓은 의미에서 지지를 보장해 주는것이다. 내담자의 현재 신념체계에 상담을 맞추어 주고, 내담자의 의견에 동조해줌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내면의 문제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용…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진술할때 [음][네] 등의 긍정적 언어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

④ 경청…침묵의 효과적인 처리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상담과정에 참여하게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고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① 1차적으로 상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②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상담기관을 연결해 준다.

(3) 내담자가 문제를 잘못인식하고 있거나 수급요건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직면, 해석 ..... 내담자가 수급자선정기준에 미달하다거나 수혜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의 문제점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나 배경, 법의 기준 등을 설명해 준다.

(4) 상담의 종료가 필요할 때 쓰는 상담기법

① 명료화…진술의 내용을 반영해 주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이 실체를 요약해서 욕구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상담이후의 상황의 전개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②구조화…상담자의 편에서 면담진행의 성질, 조건, 제한점, 목적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내담자에게 상담의 방향이나 전체적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담 이후에 행해야 할 행동, 역할 등의 제한범위 시간계약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상담을 수행하도록 한다.

(5)기타 상담전반에 사용하는 상담기법

① 탐색…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내담자의 사고를 미리 지시하거나 내담자가 선택한 주제를 정교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② 반영…내담자에 의해서 표현된 기본적인 태도, 주요감정을 새로운 용어로 정리해 주는 것이다. 내담자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거나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상담카드 작성법

1) 상담카드 형식에 쓰여진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한다.
2) 내담인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3) 내담인의 사연이나 상황,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태도 및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서술한다. (사소한것도 기록)
4) 이름, 연락처, 나이, 수급여부, 장애등급, 생계급여정도, 가족 수, 소득, **재산(싯가)**, 부채, 부양의무자, 자동차 부양의무자를 정확하게 기입한다.
5) 상담유형, 상담결과 일련번호, 날짜 상담자, 상담결과를 표기한다.
6) 의뢰자나 의뢰단체도 표기한다.
7) 조정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 내담인 및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번호, 담당 공무원이름, 내담인의 주민등록번호(최소한 앞자리)를 기록 한다
8) 문제점, 해결방안 상담결과를 기록하고 상담일지를 일련번호를 매겨서 철하여 보관한다.
9) 조거, 중재,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한다.

4.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 시 주의할 사항.

1)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한다.
(전화한 사람 본인의 문제인지?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
2)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3) 수급자인지? 수급자라면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2) 가구원 수 및 실제거주여부 및 주민등록표상의 상태를 확인한다.
3) 근로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 질병, 장애정도, 진단서첨부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4) 재산은 실거래 시가를 물어본다.
5) 부채는 금융기관부채 및 사채여부를 확인하고 사채일 경우 공증가능한지를 확인한다.
6) 예금, 적금, 보험 등 현재 잔액을 확인한다.
7) 자동차 소유여부, 배기량, 소유자를 확인하고 장애인용자동차인지?, 생계형자동차인지? 자동차유형을 확인한다.
8)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사적이전소득 등 소득형태를 파악 한다

9) 소득수령형태를 파악 한다(현금으로 급여를 받는지?,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지?)
10) 공,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지원인지? 제3자로부터의 지원인지 확인하고 금액 및 횟수나 정기적인지 여부를 알아본다.
11)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소득(배우자의 소득) 가구구성원의 현재 지위(대학생, 환자, 장애인 등)를 확인한다.
12) 부양의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일용직근로자, 상시근로자 등)를 알아본다.
13) 사실혼 관계, 의붓부모, 북한이탈주민, 에이즈 환자 타 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한다.
14)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파악한다.
15) 자녀의 나이와 생계 및 주거여부를 확인한다.
16) 장애인의 경우 장애종류나 등급을 확인한다.
17) 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18) 수급신청이후 걸리는 시간,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을 안내한다.

5.조정 및 중재

1)수급대상자임에도 수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① 수급신청하도록 한다.
②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면 수급자가 되었는지?
③ 수급액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④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못된 경우 조정, 중재한다.

2)수급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돌려보낸 경우

① 탈락사유를 확인 한다
② 관련사항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하고 쪽수 및 조항의 의미를 확인한다.
③ 관련 법조항이나 지침의 쪽수를 알려주고 탈락사유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한다.
④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면 수급자가 되었는지? 수급액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3) 생계비 수준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① 관련사항에 대해 정확히 판단한다.(부양비, 추정소득, 근로능력, 진단서 미제출 등)
②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사실조사복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정, 중재한다.
③ 사실조사복명서의 내용과 상담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 내담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다.

▶내담인의 주장이 옳을 경우
→ 기초법 지침 등 법률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정확한 사유와 금액을 측정하여 정정을 요구한다.
→증빙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구분리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생계비 조정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관련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여 제공한다.
→다른 부가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한다.

▶수급신청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소득, 신분상황, 부양의무자상황이 달라진 경우

수급자	공무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다.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제출 하도록 한다. →생계비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사실조사 복명서를 통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부가급여를 주지 않은 경우

→ 부가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 보장기관, 관련부서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을 알려준다.
→ 부가급여를 수령했는지 확인한다.
→ 부가급여를 신청했는데도 주지 않은 경우 조정 중재한다.

5)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하여 제공한다.
→ 다른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검토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지역자원연결, 복지재단의 기금 지원, 장학금 추천, 의료비 지원, 방송국 및 언론 모금프로연결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결하여 지원 한다.
→ 다른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6) 상담결과 조정 및 중재가 이루어 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7) 조정 및 중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재상담하여 지원한다.

6.조정, 중재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할 때

1)조정 중재전에 해야 할 일
①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담인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최소 앞자리 정도)를 알아 둔다.
② 내담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둔다(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일용근로자의 소

득, 가족사 등)

③ 부양비를 추정하여 미리 계산하여 두는 등 조정, 중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후 조정, 중재한다.

④ 거주지 동사무소 전화번호나 담당자의 이름을 알아둔다(내담인이 모를 경우 직접전화하면 됨)

2)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전화 한 목적을 이야기 한다.

3) 수급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낸 경우나 생계비가 적정치 못할 경우, 추정소득, 근로소득문제, 근로능력판정 등 상담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전담공무원의 의견을 듣는다.

4) 전담공무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경우 민간기관의 워커나 사회복지사가 전담공무원과 협의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린다.

5) 조사중이거나 상담만 하고 갔다거나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경우

① 전담공무원이 최소한 사안에 대해 인식을 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선사항을 알리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안에 개선되도록 요청한다.

② 상담만 하고 갔다고 하는 경우는 내담인의 상담은 구두신청으로 보아야 하며구두신청의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하여야 함을 알린다.

6)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 소득책정, **사적이전소득산정**, 추정소득, 가족관계단절, 부양능력판정, 근로능력유무판정, 장애인자동차 인정여부 등)

① 관련사항이 기술된 법조항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짚어 준다.

② 관련부서 상위부처의 담당자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③ 지침의 관련부분 쪽수를 정확히 짚어준다.

7) 실제 내담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근로소득평가액, 추정소득, 가족관계단절, 부양가능여부 등)

① 재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개선되도록 촉구한다.

② 양쪽 관련당사자(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고용주, 그밖에 주민 등 관련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8)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거나, 틀린 지침을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 경우

① 상급부서(복지부나 구청)에 질의하도록 한다.

② 부당한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연합, 소송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공론화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9)기타

① 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를 적극 활용 한다.

② 지역자원을 연결한다.

③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부가 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부가급여의 혜택을 주지 않았을 경우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부가급여도 챙겨주도록 촉구한다.

② 법적 근거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잘 모르면 담 당부서, 복지부 문서 등 참고자료를 보내주거나 알려주어 반드시 챙겨주도록 한다.

7.상담현황표 만들기

1) 상담자, 이름, 나이, 상담유형, 상담결과 등 상담상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 기재한다.
2) 상담건수, 조정으로 증가된 생계비 액수 등 수치로 나타나도록 한다.
3) 월 1회 이상 월계표를 작성하여 상담일지 맨 앞에 첨부한다.

7.기타

1)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담으로 저소득빈곤계층을 돕도록 한다.
2) 조정, 중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기초생활보장보호의뢰서 의뢰)
3) 수급자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안내한다.(추천서 써주기 등)
4) 정보제공, 급여안내 등 이미 이루어진 상담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함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재 지원 한다.
5)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6)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

① 다른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안내한다.

② 복지재단이나 관련 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연결한다.

제5강 :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장애수당, 경로연금, 위탁아동양육비, 모·부자가정지원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공공부조제도 안내(2005년 3월 기준)

김희성 (한국빈곤문제연구소 간사)

Ⅰ.의료급여 (보건복지부의료급여과:02-503-5392)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1종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2세미만아동)

2)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①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 '05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차상위기준 (원/월)	**481,759**	**802,205**	**1,089,515**	**1,363,598**	**1,563,502**	**1,773,360**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 재산기준: 기본재산공제액의 2.5배

- 자동차기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4.17%)으로 취급

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혈족"으로 함

※ 출가한 딸의 경우 가구원수는 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산정하고 실제소득은 딸의 실제소득만 산정함(사위의 실제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보지 않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A \times 1.2) + (B \times 2.5)$$

A :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사례)

본인가구의 소득평가액이 120만원(4인 가구) 재산이 9.000만원이고(서울거주)

부양의무자인 부모가구의 실제소득이 70만원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본인가구의 기준충족여부

소득 : 소득기준액이 1,363,598(4인가구 최저생계비 120%) 고 본인가구의 소득 120만원이므로 기준 충족함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이 대도시의 경우 9,500만원이므로 기준 충족함

※부양의무자의 기준충족여부

소득 : 본인가구(4인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 +부양의무자 가구(2인가구)의 최저생계비의 250%= 1,363,598원 + 1,671,000원= 3,034,598원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은 70만원이므로 소득기준충족함.

재산 : 보지 않음

※따라서 이 가구는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수급 가능함.

라) 상병 기준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 희귀난치성질환(98개상병)
- 만성질환은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을 말함(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판정

- 희귀난치성 질환은 98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코드가 일치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판정

- 만성질환(11개 만성질환과 기타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등 **통상 6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관절염, 협심증, 천식 등)**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상병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함

※ 만성질환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선 선정·지원** 진단서 추후에 제출가능(구체적 상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병원, 약국 등에 유선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함

② 급여 자격

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행려환자.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무료이나 입원 진료 시 식비-일 3.300원 중 20%인 600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식비는 1종과 동일)

- 기타 만성질환자, 12세 미만 아동,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아동

※ 05년부터 신규로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2세 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

③ 행려환자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 의료급여업무상 「**무연고자**」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를 말함

가)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

※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한 행려자(부랑인), 주취자 및 난동자 등은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 자

나) 급여자격 및 혜택 : 1종 의료급여

(비급여 부분에 부담금이 발생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대불을 해 줌)

④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도 1종 의료급여 받음.

Ⅱ. 의료급여 이외의 의료제도

1. 본인부담금 보상제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 13조 5항)

-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30일 동안 2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는 해당 자치구(시,군,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사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래와 같이 2004년 12월 11일부터 2005년 1월 10일까지 29일 입 원하여 본인부담금이 640,000원 발생한 경우

명세서	진료개시일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가	2004.12.11	5	170,000
나	2004.12.19	8	220,000
다	2005. 1. 4	16	250,000

본인부담금이 최초진료개시일로부터 29일 해당되고 본인부담금 합계액이 640.000원일 경우 20만원 초과분인 440,000원의 50%인 220,000원을 받을 수 있음

2.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6항)

-2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반환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우선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 을 합하여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2004년 7월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

사례)

본인부담금보상제도로 보상을 받고도 6개월간 1,320.000원의 진료비가 초과되었으므로 초과분 120.000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음

3. 의료비 대불제도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비용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액수를 대불 해 줌
수급권자가 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경제사정을 감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갚지 못할 경우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대불금은 상환의무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환함.

4. 장애범주에 편입시킨 7가지 질병 (2004년 7월)
안면장애, 간 장애 ,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장애.

5.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11종에서 98종으로 확대(2005년 실시)

6. 미숙아(조산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미숙아(조산아)의료비를 출생 시 체중기준으로 차등지원 된다. 2.5kg ~2kg=200만원, 1.9kg~1.5kg은 400만원, 1.5kg미만은 700만원이다. (2005년)

7. 인공달팽이관은 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8.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올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小耳)증 암. 퇴혈관질환 치료도 보험혜택을 받는다.

9. 노인 안(眼)검진(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시기를 알아야 함) 및 개안수술(개인이 시,군,구 동사무소에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전화: 02-718-1102,1137)을 통해 실시. 무료.
대상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 면 지역의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노인 수술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10. 틀니: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보건소에 신청, 무료

11.10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정 2-300만원

Ⅲ. 노인복지제도(보건복지부 노인복지정책과 전화 : 02-504-6235, 02-503-7582,)

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 창출참여가 있다.

1.경로연금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경 로 연 금</th></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65세 이상)
·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
※ 2006년부터 65세이상 일반 저소득노인도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2005년 3월21일 발표</td></tr>
<tr><td colspan="2">구비서류</td><td>·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확인서류, 진단서
· 기타 :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학비납입영수증), 호적(제적) 등본, 자동차관련서류 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td></tr>
<tr><td colspan="2">선정기준</td><td>○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00분의 65이내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85,000원 이하(4월18일발표)

<table>
<tr><td>1인</td><td>2인</td><td>3인</td><td>4인</td><td>5인</td><td>6인이상</td></tr>
<tr><td>585천원</td><td>1,117천원</td><td>1,755천원</td><td>2,340천원</td><td>2,925천원</td><td>585천원×
총가구원수</td></tr>
</table>

○ 재산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재산 합산 액 보다 적을 경우

<table>
<tr><td>대도시</td><td>중소도시</td><td>농어촌</td></tr>
<tr><td>6.650만원</td><td>5.425만원</td><td>5,075만원</td></tr>
</table>

☞기초법 기본공제 재산액의 100분의 175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액을 50% 추가</td></tr>
<tr><td rowspan="3">조사범위</td><td>소득평가액</td><td>○본인은 소득평가액을, 부양의무자는 실제소득을 적용</td></tr>
<tr><td>재산평가액</td><td>○금융재산 조사는 본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td></tr>
<tr><td>부양의무자</td><td>○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td></tr>
</table>

지원내용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액	
	①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수급자 포함)	80세 이상	월 50,000원
		65～79세	월 45,000원
	② 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노인(7.1일생 포함)	無배우자	월 35,000원
		부부동시 수급자	월 30,630원

1. 재산기준적용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 및 부양의무자와 노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단독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액을 50% 추가
   - 3세대 가정 : 100% 추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단독가구가 소유한 전용면적 15평 이하의 주택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은 과세표준액 기준 적용

<재산기준 적용사례>

- 재산기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별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75를 합산한 금액 이하

○ 실 적용요령(예시)
- 경로연금 수급대상 노인이 경기도 과천시 거주, 아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 재산조사 결과 : 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인 경우
  ☞ 총 재산액 : **14,600만원**(수급대상 노인 가구 5,100만원 서울 거주 아들 가구 9,500만원)
  ☞ 재산기준액 : **12,075만원**(경기도 과천시 가구 5,425만원 서울 가구 6,650만원)
※ 재산기준 판정 : 기준초과 부적합

2. 가구원수 범위
   - 현역군인, 해외체류, 복역, 보장시설 수용중인 자는 제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중 상호부양의무가 있는 경우는 포함
   - 장인·장모 또는 형제·자매(소득 및 재산조사 제외)
   -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1가구이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별도가구임
   - 기타 사항은「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3. 부양의무자 조사

① 부양의무자 범위

가) 본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포함)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상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자는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구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다) 출가한 딸과 사위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소득조사만 실시하고 재산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함)

라) 손·자녀(외손자녀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노인 본인을 기준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소득 및 재산을 합산, 총 가구원수에 포함

-노인과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생략하되, 20세 미만의 자와 20세 이상의 손·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 인 자 포함

※ 노인인구증가나 물가수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급여수준도 작년과 동일하며
수급자 선정기준도 복잡하게 적용함.

2. 노인교통수당

1)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소득, 재산기준 없음, 지원액이 지자체 마다 다르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도 함)

2)지원일자 : 분기별로 지급(1,4,7,10월 지급) 하나 월별지급의 경우도 있음.

3)지원금액 :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월 20회 탑승하는 금액(서울기준)

4)신 청 : “교통수당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광역단체별 노인교통수당지급현황

(단위 : 원)

구분	교통수당지급액 (월 기준)	구분	교통수당지급액 (월기준)
서울 경기	일:12,000 차:14,000 일:12,000 차:14,000	울산	9,000
인천	일:12,000 차:14,000	대구	10,200
강원	시 9,600 군 9,000	경북	9,600
충남	약 8,400	경남	8,400
대전	일:9,600 차:16,000	전남	8,400
충북	10,500-12,750	광주	10,200
부산	8,400	제주	시 14,300 군 15,400

일 : 일반계층, 차 : 차상위계층

3. 노인건강진단(지방이양사업)

1) 대상

가)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노인(최저생계비 120%)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2004년 진단자 중 건강자는 제외)

- 차상위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 기타, 보건소장이 노인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건강진단항목

가) 1차 건강진단 : 진찰 등 12개 항목

기 본 진 료	혈 액 검 사	기 타 검 사
1. 진찰(시진, 청진, 촉진, 문진) 2. 체위검사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3. 치과검사 (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1. 혈색소 2. 총콜레스테롤 3. 혈청지오티 4. 혈청지피티 5. 혈 당	1. 요검사(요당, 요단백, 요잠혈) 2. 안검사(정밀안저검사, 양측) 3. 흉부 X선 간접촬영 4. 간이정신상태검사(MMSE-K)

나) 2차 건강진단 : 진찰 등 30개 항목 (기본진료, 흉부질환, 순환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간 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질환,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검사 등)

3) 신청방법: 보건소 및 동사무소, 건강진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신청

4. 노인일자리 창출

1) 대상 : 65세 이상 원칙(55세~64세 제한적 참여)

2) 지원내용 :보수 20만원(월), 교육훈련비 10~20만원, 부대비용 10만원 이내

3) 사업유형

가) 공공참여형 : 65세 이상 노인 지자체 직접수행, 보수 20만원, 부대비용 10만원 지원

나) 사회참여형 : 노인복지관, 노인인력지원기관 등 위탁수행, 교육훈련필수 교육훈련비 10~20만원, 보수지원20만원이내,

다) 시장참여형 : 창업 및 사업단 운영에 참여, 보수20만원

4) 신청 : 동사무소 및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Ⅳ. 장애인 복지제도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여러 가지지원으로 나뉘어 지며,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의료비지원, 장애인 등록비 장애인재활보조구 등이 있다.

1.보건복지부에서 행하는 장애인 관련 제도(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503-7567)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 중증장애인 : 1인당 월6만원 ○ 경증장애인 : 1인당 월2만원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 청장에 신청 -구두로 신청 가능
2. 중증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02-503 -757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18세미만 1급 장애 아동 보호자** (고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20세 포함)	○ 1인당 월5만원	- 읍·면·동 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130%)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월) ·1인 : 521,906원이하 ·2인 : 869,055원이하 ·3인 : 1,180,308원이하 ·4인 : 1,477,232원이하 ·5인 : 1,693,794원이하 ·6인 : 1,921,140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17,346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 읍·면·동 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 이자 : 4%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무보증 여신대상자(1.200만원이하: **신불자가 아니고** 금융기관대출금2천만원이하, 재산세2만원 이상, 연소득6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 ○보증여신대상자(1,500만원 이하):재산세 2만원이상,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자 ○담보여신대상자: 담보제공	-읍·면·동에 신청
5.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입주자 모집일 공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장애인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임대주택 공급 시 장애인 할당 부분을 확보하여 공급함.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1부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읍·면·동에 신청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무료 교부 02-503 8500,8207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 에 신청
8.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2.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제도

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승용차 혜택을 위해 가구분리하지 않아도 됨)

2) 의료비 세금 공제 : 등록 장애인, 당해연도의료비 전액 세금공제 시 신청

3) 공제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4) 철도·도시철도, 항공료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50%)

5) 기타 : 소득세 인적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

제 등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공원, 고궁 등 입장료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등.

4.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2.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6.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7.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Ⅴ. 모·부자가정 복지제도(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02-2110-6221~2)

모·부자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6세 이하의 자녀를 유치원, 유아원에 보낼 때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중고등학생은 등록금과 입학금이 면제되고, 어린이집 무료이용, 임대주택입주자격, 모자원 입주가능, 복지자금 2000만원까지 년4%로 대출 된다

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선정기준

①소득인정액을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

가) 기초공제액

-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
  ·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②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의 가구에 해당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5.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상한액 (최저생계비 130 %)	87만원	118만원	148만원	169만원	192만원

3)지원내용

①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전액
지원절차 : 읍,면,동에서 학비지원신청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납입고지서 제출 → **학부모 계좌에 입금**

② 6세미만 아동양육비 지원 : 월 5만원(9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지원절차 : 시,군,구청장 책임아래 복지행정시스템의 아동변동사항을 통해 보호자 계좌에 입금

③ 복지자금 대여
가) 대출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 가정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 자활 의지가 뚜렷하

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나) 자금대여기관 : 농협

다) 대여기준 및 조건

-한도 : 2,000만원 이내(신용대출의 경우)

-이율 : 년 4% 고정금리

-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④ 임대주택 입주 및 모자원입소 : 동사무소에 신청, 모자원의 경우 2년1회에 거쳐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Ⅵ. 아동복지제도(복지부 아동정책과 : 02-503-7580.81)

아동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 및 가정위탁보호제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급식지원 등이 있다.

1. 소년소녀가정

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 하는 세대도 포함)

② 지원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어도 중,고등학교 재학 중 일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가능.

2)지원내용

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

② 부가급여 : 7만원(1인/월)

③ 정서적 후원: 후견인지정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④ 전세자금대출

-지원액 : 수도 광역시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무이자)

-신청방법 : 시.군.구청(아동 또는 주택 관련과)신청 대한주택공사(해당 지역 본부나 전화 031-738-3566)로 문의.

※ 비용 : 주택공사가 전세권설정 비용부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새집 모두 가능.

※ 다른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소녀 소년가장의 경우 대출받기가 어렵다

2. 가정위탁 보호

1) 지원대상

① 대상아동

가)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나)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② 대상가정 유형

가)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나)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다)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2)지원내용

①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②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가)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위탁아동양육비)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3) 선정절차

①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신청서 제출

4) 근 거

①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조항

③ 의료급여법 제3조

3. 영유아 보육료

(여성부보육지원과 02-3703-2500, 복지부보육아동정책과:02-503-7580,81)

1) 2004년과 달라진 보육료 지원제도

①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가) **최저생계비 180%**까지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4 계층까지 차등 지원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②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최저생계비의 240%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 월 15만3천원)

③ 만12세 이하 모든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월 29만 9천원**

④ 다자녀 가구 둘째아동부터 보육료 일부 지원(최저생계비의 300%)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40만원이하, 0~1세 월6만원, 2세 월5만원, 3세 이상 3만원

2) 대상시설

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3) 지원비율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정액지원(월 153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정액지원(월 299천원)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정액지원(월 30천원~60천원

4) 지원절차

① 학부모

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보육료 지원대상확인(통지)서를 보육시설에 제출

나)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를 제출.

다)두자녀 이상 보육료: 두자녀 이상의 '입소확인서(해당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원장의 날인요)' 및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

※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를 제출.

② 시설장 계좌로 입금

5)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① 지원대상 : 만0세~만4세까지의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

② 선정기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모부자가정아동, 시설아동 등			
2층	109만원이하	136만원이하	156만원이하	177만원이하
3층	150만원이하	170만원이하	190만원이하	210만원이하
4층	184만원이하	204만원이하	224만원이하	244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③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두자녀 보육료 포함시		
						계	국고	지방비
1층	만2세 미만	서울	299,000	59,800	239,200	-	-	-
		지방		149,500	149,500		-	-
	만2세	서울	247,000	49,400	197,600	-	-	-
		지방		123,500	123,500		-	-
	만3-4세	서울	153,000	30,600	122,400	-	-	-
		지방		76,500	76,500		-	-
2층	만2세 미만	서울	239,200	47,840	191,360	299,000	59,800	239,200
		지방		119,600	119,600		149,500	149,500
	만2세	서울	197,600	39,520	158,080	247,000	49,400	197,600
		지방		98,800	98,800		123,500	123,500
	만3-4세	서울	122,400	24,480	97,920	152,400	30,480	121,920
		지방		61,200	61,200		76,200	76,200
3층	만2세 미만	서울	179,400	35,880	143,520	239,200	47,840	191,360
		지방		89,700	89,700		119,600	119,600
	만2세	서울	148,200	29,640	118,560	197,600	39,520	158,080
		지방		74,100	74,100		98,800	98,800
	만3-4세	서울	91,800	18,360	73,440	121,800	24,360	97,440
		지방		45,900	45,900		60,900	60,900
4층	만2세 미만	서울	89,700	17,940	71,760	149,700	29,940	119,760
		지방		44,850	44,850		74,850	74,850
	만2세	서울	74,100	14,820	59,280	124,100	24,820	99,280
		지방		37,050	37,050		62,050	62,050
	만3-4세	서울	45,900	9,180	36,720	75,900	15,180	60,720
		지방		22,950	22,950		37,950	37,950

6). 두 자녀 이상 보육료

① 지원대상

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이하**(최저생계비 300%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관내(시·군·구)'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이이상(만5세 이하) 아동

※ 첫째아가 관내의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첫째아가 취학아동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둘째아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두 자녀가 동시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둘째아이상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불가

② 선정기준

가)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20만원이하	340만원이하	360만원이하	380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③ 정부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0~1세	서울	60,000	12,000	48,000
	지방		30,000	30,000
만2세	서울	50,000	10,000	40,000
	지방		25,000	25,000
만3~5세	서울	30,000	6,000	24,000
	지방		15,000	15,000

7) 만5세아 무상보육료

① 지원대상

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최저생계비240%이하)** 취학전 만5세아동.

나) 취학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지원.(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1회

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아동이 만4세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가능.

② 선정기준

가)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252만원이하	272만원이하	292만원이하	312만원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 마다 20만원씩 증가

나) 자동차 : 2000cc미만 차량, 생업용차량, 차령 10년 이상의 차량은 가능

③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만 5세아	서울	153,000	30,600	122,400
	지방		76,500	76,500

8) 장애아 무상보육료

① 지원대상(0세~만12세 취학전 장애아동)

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

예외-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취학유예서를 제출)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가능.
(장애진단서 유효기간 1년).

② 선정기준

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확인.

③ 지원단가

가) 월 299천원 지원 : 중증/경증장애 구분 없음

9) 기타 보육료

① 방과 후 보육료

가) 저소득층(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이내)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 이용 시 해당 정부지원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나) 저소득층 아동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	국 고	지 방 비	비 고
1층	76,500	15,300	61,200	기준액 (정부지원단가의 50%)
		38,250	38,250	
2층	61,200	12,240	48,960	기준액의80%
		30,600	30,600	
3층	45,900	9,180	36,720	기준액의60%
		22,950	22,950	
4층	22,950	4,590	18,360	기준액의30%
		11,475	11,475	

다) 단,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지원단가의 50%(월 149,500원)를 지원한다.

※ 방학기간 중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한다.

② 시간 연장 보육료

가) 기준시간 초과(19:30 ~ 24:00) 보육료는 시간당 1,500원(연령에 관계 없이 동일) 지원

③ 야간 보육료

가) 야간보육(19:30 ~ 익일 07: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하며,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주간에도 보호할 경우 150%까지만 지급)

④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가) 기준단가 : 일 보육료×150%(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 일 보육료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26일

⑤ 시간제 보육료

가) 기준단가 : 2,500원/시간(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지원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양육보조수당, 의료비, 교육급여, 의료급여(4가지)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

① 지급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나)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다) 입양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이 18세를 초과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때에는 졸업시 까지 지원 가능

② 지급범위

가) 양육보조수당 : 입양아동 1인당 월 **525천원**씩 지급

나)의료비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③ 지급방법

가)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이 발급 가능

나)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할 것

- 양육보조수당은 매월 **525천원** 입금
- 의료비의 경우 매분기 6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초과시는 다음분기에 소급하

여 지급할 것

☞ 사례예시

당해분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당해분기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분기에 40만원을 지급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것. 다만, 3/4분기까지 미지급액이 18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지급 가능함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① 지원대상 : 입양아동으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입학생

② 지원범위 :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③ 지원절차

가)해당학교에 입양사실확인서 제출

3)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의료급여 1종

4)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① 대상 의료기관 : 국립의료원

5.아동급식지원

1) 지원대상: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결손 등으로 인하여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

2) 지원내용

①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②취학아동 : 조·석식, 방학·토·공휴일 중식지원

3) 신청 :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 동사무소 등에 신청

Ⅶ. 창업 자금지원 제도

여성가장, 장기실직자, 소상공인등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리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정부 정책지원자금은 무상지원의 눈먼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빌린 돈이니 만큼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환계획까지 세워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창업상담을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자기자본없이 지원금만 받아서 창업하려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자기자본을 40%는 가져야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 정부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요 근래에서 창업보육센타등에서 창업종목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입지선정, 세금관련사항 등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한다.

창업자금지원기관

자금 지원기관	자금 지원내용	최 대 지원금액	연락처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1억원	02-3703-2545
근로복지공단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	1억원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1억원	1588-007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자영업 창업지원	5천만원	02-723-5400/1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천만원	1588-5302
신용보증기금	생계형 창업 특별보증	1억원	1588-6565
신용보증기금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	3억	1588-656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아이디어.기술등의 창업보육	사무실지원	02-2141-5000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	저소득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5천만원	02-528-0217

1)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자격은 제조업과 건설업·광업·운송업 등의 업종은 10인 미만,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외식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5 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금리는 연 5.9%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후 , 4년 간 대출금액의 3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자금신청은 2004년 1월1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다.(홈페이지:www.sbdc.or.kr/,전화:1588-5302)

2) 근로복지공단

점포형 창업지원은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업자, 실직여성가장에 한해 대출해주고 있다. 서울과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 점포 전·월세 모두 대출이 가능한데 보통 1~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세 점포는 연리 5.5%의 이자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월세 점포의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홈페이지:www.welco.or.kr/,전화:1588-0075)

■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table>
<tr><td>지원내용</td><td colspan="3">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합니다.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 포함) 보증금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합니다.</td></tr>
<tr><td>지원점포
조건</td><td colspan="3">▶ 전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의 점포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 약 12만원 정도)을 요합니다.</td></tr>
<tr><td>신청 자격</td><td colspan="3">6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전직 실업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② 전직실업자로서 실업기간중 이수한 창업훈련관련 직종, 본인 보유의 국가기술 자격증 또는 실직전 1년이상 종사한 관련 업종으로 창업하고자 하는자(부양가족 및 세대주요건 불필요)
③ 신규청년 실업자로서 전공 및 보유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자</td></tr>
<tr><td>제외대상</td><td colspan="3">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등을 지원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교육 기본법 제9조에 의해 학교에 재학중인 자(방송통신대학 제외)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td></tr>
<tr><td>지원 제한
업종</td><td colspan="3">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 향락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td></tr>
<tr><td>지원기간</td><td>1년~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td><td>지원조건</td><td>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지원금에 대하여 연리 5.5 %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td></tr>
<tr><td>제출서류
및
신청문의</td><td colspan="3">지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실업입증서류 각 1부(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td></tr>
</table>

■여성실직가장 창업지원

<table>
<tr><td>지원내용</td><td colspan="3">신청자가 희망하는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국한)를 공단이 임차(계약)하여 이를 대여합니다.
※ 2001. 7. 1부터는 월세가 일부있는 점포의 경우에도 해당월세를 본인이 직접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 점포의 경우 공단이 정한 한도액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월세(관리비포함)보증금 납부시 지원이 가능하며, 전세점포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점포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설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td></tr>
<tr><td>지원점포 조건</td><td colspan="3">▶ 전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
▶ 월세점포 :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로 본인이 부담하는 월세 및 관리비가 총 80만원 이내의 점포
※ 단, 월세점포의 경우 공단 지원금에 대한 보증금 상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 보증금 납부 또는 500만원 한도의 보증보험 가입(연 보험료12만원 정도)을 요합니다.</td></tr>
<tr><td>신청 자격</td><td colspan="3">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후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여성가장
·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
· 배우자가 교도소(형 확정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등의 사유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실직여성가장(미혼모, 임산부포함)
· 미혼여성가장으로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td></tr>
<tr><td>제외대상</td><td colspan="3">· 공단으로부터 생업자금, 영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후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공단의 실업대부자금을 대부받은 후 부정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지원이 취소된 자
· 신용불량거래 등록자</td></tr>
<tr><td>지원 제한 업종</td><td colspan="3">유흥업 및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일부 사치향락 업종은 지원불가합니다.</td></tr>
<tr><td>지원기간</td><td>1년～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td><td>지원조건</td><td>공단에서 지원한 점포임차자금에 대하여 연리 5.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균등납부</td></tr>
<tr><td>제출서류 및 신청문의</td><td colspan="3">·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생활(모자)보호대상자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실직여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부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td></tr>
</table>

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모두 대출 자격이 있다. 단, 만 20세 미만인 자 , 재직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며, 연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에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1년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신청은 년 2회로 4월, 8월 각각 한달 동안만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 :www.kepad.or.kr, / 전화: 02-723-5400/1)

■장애인생활안정자금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주는 제도

가)융자대상 : 장애인근로자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나)융자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다)금리 및 상환조건대출금리 : 연리 3%
- 융자기간 : 5년
-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으로 5년동안 원금을 균등상환

라)융자결정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임금수준(최저임금에 산입되는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낮은자
- 중앙부처의 장관급이상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표창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공단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규정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자

마)취급은행
국민, 우리, 한국시티(구.한미), 하나, 외환, 광주, 전북, 대구, 경남, 제주은행

바)신용보증지원

융자금 대출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1인당 보증한도액 1천만원)를 이용하면 담보(보증)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소액의 취급수수료를 부담,우리은행 계좌를 소지 자에 지원가능.

4) 여성부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 대상은 미장원.공인중개사.정보기술(IT) 등 해당분야에서 기능이나 기술을가진 여성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3년 이내여야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창업교육을 수료한 여성,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 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이 해당된다. 대출금액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후 4년 균등상환, 금리는 연리 4.5%을 기준으로 하되 실세금리에 연동된다. 자금신청 집행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이다.

(홈페이지: www.moge.go.kr, / 전화: 02-3703-2545)

5) 신용보증기금 / 지식산업창업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은 차세대 성장업종 (IT, BT, NT, CT, ET, ST산업)에 최대3억원, 전문 자격증 (원예, 산업디자인, 컨벤션기획, 기계, 금속, 정보통신등 기술·기능분야와 고부가가치 공정분야, 전문서비스 분야) 소지자가 연관사업을 창업하면 신보가 최근 6개월 매출액의 3분의 1 범위에서 운전자금을 보증한다. 초기 시설자금은 1억원 범위에서 전액 보증한다.(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금과 임차금만 지원)

연합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s2000.com, / 전화: 1588-6565)

6)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에서는 월소득 158만원(최저생계비1.5%)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를 위한 소자본 창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00만원이고 이자율은 년 3%이고 만기는 2년이고 2년 연장가능하다.. 자금소진시 까지 대출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었다가 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www.womanbiz.or.kr / 전화: 02-369-0900)

7) 사회연대은행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

국민기금 창업지원사업은 빈곤소외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국민은행**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연대은행에 지정기탁한 사업입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저소득소외계층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나눔이웃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근원처방이 될 것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나눔이웃들의 창업준비에서부터 창업자금 대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후관리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있다.

1) 신청대상

저소득층으로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업개시 후 경영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인사업체

혹은 공동사업체

2) 자격선정 기준

① 자활의지와 자활능력 여부

가) 18세이상 64세이하의 근로능력자

나) 자활탐색 노력 및 생애 직업활동 반영

다) 국가 자활사업 참여자 가산점 부여 소득 및 재산기준

②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차상위계층까지 해당

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 가산점 부여

③ 가구여건에 따른 우대조건

가) 부양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

나)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 및 노인의 유무

④ 신용불량 여부

가) 개인 사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나) 공동체사업체는 신용불량자가 50%이상 넘지 않아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참여할 시 전체 구성원의 동의서를 첨부

⑤ 사업능력 여부

가) 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직종 종사경험 유무

나)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우대

다) 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형성기간, 구성원의 관계성을 고려

3)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 내외

(창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창업이후 경영개선 자금)

4) 창업지원사업 흐름

신청공고▶상담/접수▶심사▶지원결정▶교육훈련▶대출▶사후관리▶자금상환

5) 대출상환

가) 6개월 이후부터 매출이익금의 일부를 월별로 상환하며, 상환금은 따른 창업희망자의 창업 밀알자금으로 사용됨 (6개월 거치 30개월 균등분할상환, 이자 연4%)

6) 지원 신청

①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파일)
- 주민등록등본 1부
- 추천서 해당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
- 기타 해당사항자별로 첨부서류

사회연대은행 (Tel: 02-2274-9641, Fax:02-2274-9643
홈페이지: www.bss.or.kr / E-mail: bss@bss.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8) 신나는 조합(02-365-1265, 홈페이지: http://joyfulunion.or.kr)

1)무담보 소액신용대출

① 개념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생업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하는 자활 프로그램

② 사업의 주된 내용

- 무보증, 무담보 종잣돈(seed money) 대출
- 빈곤퇴치를 위한 자활, 자립 의식의 고취
- 빈곤층의 자영업 창업기회 제공 ⇒ 통합적 빈민자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자활, 자립을 위한 개별사례 상담 및 가족지원 등 통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대출대상자 선정기준
- 월소득 4인 가구 150넘거나 자산이 3,000만원이하
- 신용불량자를 게의치 않지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여야 함
- 대출한도 : 1인당 500만원(창업자금)
- 상환조건 : 이자 년 4% 원금과 이자를 매주상환
- 무담보, 무보증, 가능하면 공동체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함.

Ⅷ.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

지원제도	대 상	대출요건 및 한도	조건	신청절차	비고
1.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①지역별 전세보증금이 일정액이하인 저소득 가구주 ②15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외 ③부동산소유자 제외	▶전세보증금이 ·서울:5,000만원 ·수도권, 광역시 4,000만원 ·기타지역:3,000만원 이하로 전세가의 70%까지 대출 ▶보증대출(연대보증인 또는 한국주택금유공사의 보증서제출) ▶무보증대출의 경우(집주인 확약서 첨부)	▶보증대출: 년3% ▶무보증대출: 년4% ▶2년만기 일시상환으로 2회에 걸쳐서 연기 가능(최장6년)	▶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시,군,구청 추천서발급→은행심사후 대출 ▶취급은행: 국민, 우리, 하나	전세자금
2. 저소득 생업자금 대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실제소득이 다음기준인 자. -신용융자자: 최저생계비의 150% -담보융자자: 최저생계비의 150%	▶신용융자: -가구당 2,000만원이하(보증) -가구당 1,200만원 이하(무보증) ▶담보융자:가구당 담보범위 내	▶ 이율 : 연4% ▶ 상환조건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해당읍,면,동사무소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추천서(구청)→은행 심사후 대출 (중앙정부 지원제도)	창업 및 사업자금
3.모,부자 가정 복지자금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최저생계비의 130%)	▶무보증일 경우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년 1,000만원이상 소득자 ▶보증인을 세울 경우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년 소득 1,200만원 이상인자가 보증할 경우 대출가능	▶상환방법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이자: 년4%	▶해당읍,면,동사무소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추천서(구청)→은행 심사후 대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음)	창업 및 사업자금

지원제도	대 상	대출요건 및 한도	조건	신청절차	비고
4.장애인 자립자금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 -재산: 가구당 7,600만원 이하	▶1가구당 대여 한도액 : 1,500 만원 - 신용융자 1,200만원 까지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자 : 4%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추천서(구청) →은행 심사 후 대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 대여 대상에서 제외	창업 및 사업자금
5.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 대출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저소득: 월소득 92만원이하, 재산규모 4,500만원 이상인자)	▶한도: 1인당 2,000만원	▶조건: 2년까지 대출 ▶이율: 년 4%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에 신청, 자금소진시까지 ▶전화 02-528-0217	창업자금
6.장기 실업자 창업지원	▶세대주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1억원 이내 점포 임대 (20세미만, 60세이상인자, 신용불량자, 사치향락업종 제외)	▶조건: 년 5.5% 임대료 균등납부, (최장 6년)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계획서, 실업입증서류 등 제출, -아무 업종이나 창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기간 중 이수한 창업훈련 관련업종이나 자격증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한 관련 분야 등으로 업종이 제한된다	창업자금

IX.신용회복지원제도

1.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찾기

빚을 일시에 갚지 못하여 고통 받는 신용불량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용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에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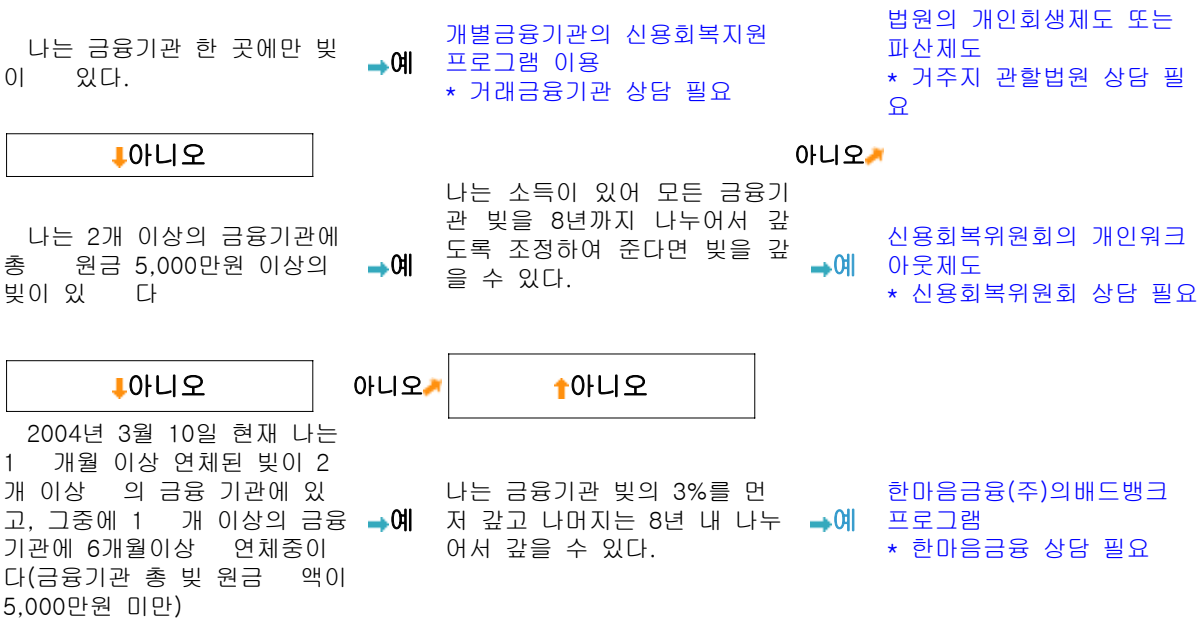

2. 주요신용회복지원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Bad Bank)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대상자	신용불량자이며, 2개 이상금융기관에 총 채무 3억원 이하인 자	2004년 3월 10일 현재 요건충족자 ◎은행, 카드사 등 배드뱅크 협약 가입기관(이하'협약기관'이라함)에 1개 이상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2개 이상 협약기관에 1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개 이상의 채무가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 협약기관 총 채무액이 원금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인 자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 채권 5억원 이내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채무조정 대상채무	모든 금융기관의 담보 및 무담보 채무	협약기관에 1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무(담보, 정상채무제외)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

구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배드뱅크(Bad Bank)	개인채무자회생제도
신청기간	언제나 신청가능	한시적 운영 -3개월만 채무조정신청 받음 -2004년 5월 20일부터 시행(2004년 8월20일 종료)	2004년 9월 현재 시행중이며 언제나 신청가능
지원방법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저리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연체된 채무원금의 3%현금을 미리 받아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장기저리 분할상환으로 신규대출(현금지급은 없음)	8년 이내 변제기간으로 채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을 것)에 의해 변제
신청방법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	신청서	채무자가 본인 혹은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신청
신청비용	신청 접수비 5만원	수수료는 없으나 원금의 3%를 상환	인지세 및 변호사이용 시 변호사 비용
채무조정	채무조정 시 총 채무액의 1/3까지 감면가능. 다만,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감면가능	신규대출시 연체이자만 감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은 불허	채무조정액을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하고 성실히 납부를 완료 후 면책
불 이행시	신용불량자 재등록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전 금융기관에 실효사실 통보,	법원판결에 따라 채무가 원상복구 되든지 귀책사유가 없을시 면책됨
시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대표전화:02-6337-2000	한마음금융(주) (www.badbank.or.kr) 전화:1588-3570	법원 (www.scourt.go.kr) 대표전화:02-3480-1100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불량자상담			
대상	1.수급자이며 현재 연체중인 자(2005년 3월 23일 이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 2.수급자이며 미취업 청년층 3.수급자이며 자영업자	1.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된 기초생활수급자(3월23일 이전 수급자이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2. 채무조정 협약기관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사람이 가능	
혜택	1.연체이자 면제 2.수급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원금 상환유예 3.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나면 원금에 대해 10년 동안 무이자 분할상환 4일반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상환기간이 7-8년 동안 임		

※청년층:2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된 사람, 졸업 후 취직되지 않거나 학자금 연체되거나 미성년자거나 학생, 실업자, 군인 6개월 이내 입대예정자, 부모 연대보증자, 보증채무부담자:만29세 (75년1월 이전 출생자)
※자영업자:004년 12월 31일 현재 신용불량자로 된 사람,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년 매출액 48,000미만인자.

2.파산 및 면책제도

1)파산의 의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면책의 의의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3)면책의 효과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 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 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4)복권의 의미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5)복권의 효과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파산 및 면책 비용

1).파산신청 비용

- 인지대 : 1,000원
- 관보게재료 : 7,800원
- 송달료 : 27,400원 + (채권자수 * 2,740원 * 3)
- 신문공고료 : 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2). 면책신청 비용

- 신청수수료(수입인지) : 1,000원
- 송달료 : 27,400 + (채권자수 * 2,740 * 3)
- 예납금(신문공고료 등) : 383,400 원

이상 서울지방법원 기준이며 각 지방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파산신청 하는 곳

전국법원전화번호

서울지방법원 파산과	02-530-1610	울산지방법원	052-228-8274
수원지방법원	031-210-1286,1281	창원지방법원	055-239-2127
인천지방법원	032-860-1807	광주지방법원	062-239-1656
의정부지방법원	031-828-0316	전주지방법원	063-259-5507
춘천지방법원	033-259-9701	제주 지방법원	064-729-2213
대전지방법원	042-470-1784	부산지방법원	051-590-1755
청주지방법원	043-299-7108	대구지방법원	053-757-6789

[부록1]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대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40만1천원, 2인 66만8천원, 3인 90만7천원, 4인 113만6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1. 재산은 4,100만원(일반재산 3,8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1인 4,760만원, 2인 5,400만원, 3인 5,970만원, 4인 6,620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43천원, 2인: 571천원, 3인: 776천원, 4인:972천원, 5인 1,114천원, 6인: 1,26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6만원(1,2급), 2만원(3-6급),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자식이 없거나,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출가한 딸 15%, 아들 40%)
5. 4인 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 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 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 217만원이고, 재산이 11,318만원 미만이면 부

모 (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36만원 ~ 217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11,318만원),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113만원의 120%를 뺀 값의 40%..
- 소득이 21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11,318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66만원, 4인가구는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66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11,318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11,318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7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 가 면제 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특례

15. 대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3만원 이하 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3천8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17만원~27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3천8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 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7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이거나 재산이 13,828만원이면서 소득이 57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공제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27,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28.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의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자녀를 부양의 무자로 처리(부양비 15%, 성년이 된 후 3년 동안 적용)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40만1천원, 2인 66만8천원, 3인 90만8천원, 4인 113만8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1. 재산은 3,400만원(일반재산 3,1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1인4,062만원, 2인 4,703만원, 3인 5,277만원, 4인 5,825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43천원, 2인: 571천원, 3인: 776천원, 4인:972천원, 5인 1,114천원, 6인: 1,26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6만원(1,2급), 2만원(3-6급),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출가한 딸 15%,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56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 217만원미만이고, 재산이 9,56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36만원 ~ 217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 부양비는 아

들가구의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13만원의 120 %을 뺀 값의 40%..

- 소득이 21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9,568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67만원, 4인가구는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66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 11,318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9,568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7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특례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 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15. 중소도시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3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 2천7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17만원~27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2천7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7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이거나 재산이 13,828만원이면서 소득이 57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제합니다.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류금지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 (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27,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28.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의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자녀를 부양의무자로 처리(부양비 15%, 성년이 된 후 3년 동안 적용)

알기 쉬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 농어촌을 중심으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류정순
전화: 577-6809/6011
080-333-9413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인 40만1천원, 2인 66만8천원, 3인 90만8천원, 4인 113만8천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1. 재산은 3,200만원(일반재산 2,9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1인 3,862만원, 2인 4,503만원, 3인 5,077만원, 4인 5,625만원 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43천원, 2인: 571천원 3인: 776천원, 4인:972천원, 5인 1,114천원, 6인: 1,26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6만원(1,2급), 2만원(3-6급) 65~79세 노인은 경로연금 4만5천 원, 80세 이상 노인은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부양비는 출가한 딸 15%, ,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06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36만원 ~ 217만원이고, 재산이 9,068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36만원 ~ 217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최저생계비 113만원의 120 %을 뺀 값의 40%..

- 소득이 217만원 이상 또는 재산이 9,068만원 이상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67만원, 4인가구는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66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13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 9,068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9,068 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17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75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비를 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4. 아들네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가 면

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특례

15. 농어촌 거주 노부모의 소득이 33 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재산이 1억1천5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 (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령 아들(4인가구)의 부양비가 많아 부모가 탈락되더라도,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217만원~271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1천5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71만원이면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80만원이거나 재산이 1억1천5백만원이면서 소득이 57만원 (부양의무자는 의료비, 대학생교육비공제후) 미만 이면 부모(2인가구) 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국민연금의 반은 제합니다.

■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압류금지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 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

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6. 홀로된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27,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인 미혼자녀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28.가구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의 취업자녀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자녀를 부양의 무자로 처리(부양비 15%, 성년이 된 후 3년 동안 적용)

[부록2]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1	A18.3, K93.0	장·복막 및 장간막선 결핵	
2	A81	중추신경계 슬로바이러스감염	
3	B20-B24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4	B25	거대세포바이러스병	
5	B45	크립토콕쿠스증	
6	C90-C96	백혈병	
7	C00-C88,C97, D00~D09	악성신생물	
8	**D35.2**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추가질환
9	**D55.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추가질환
10	**D55.2**	**해당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추가질환
11	D60-D61	무형성 빈혈	
12	D66-D68.4	혈우병	
13	D69.1	정성혈소판결함	
14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15	D70	무과립세포증	
16	D71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 장애	
17	D76	림프망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18	D80-D84.9	면역결핍증	
19	D86	사르코이드증	
20	E22.0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21	E22.1	고프로락틴혈증	
22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칼만증후군)**	추가질환
23	E24	쿠싱증후군	
24	E25	부신성기장애	
25	E27.1-2, E27.4	부신의 기타장애	
26	**E34.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레프리코니즘 등)**	추가질환
27	E70-E77	대사장애	
28	E80.2	기타 포르피린증	
29	E83.0	구리대사장애(윌슨병 등)	
30	E84	낭성섬유증	
31	E85	아밀로이드증	
32	F84.2	레트 증후군	
33	G10	헌팅톤병	
34	G11	유전성 운동실조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35	G12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36	G13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	
37	G20	파킨슨병	
38	G35	다발성 경화증	
39	G41	간질지속상태	
40	**G51.2**	**멜커슨증후군**	추가질환
41	**G56.4**	**작열통**	추가질환
42	**G60.0**	**유전성 운동 및 감각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추가질환
43	**G63.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추가질환
44	**G90.8**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상태**	추가질환
45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추가질환
46	G61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47	G70.0-G70.2	중증 근무력증	
48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49	**I82.0**	**버드-키아리 증후군**	추가질환
50	I42.0-I42.4	심근병증	
51	I67.5	모야모야병	
52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	
53	K50	크론병	
54	K51	궤양성 대장염	
55	**K74.3**	**원발성 담증성 경화**	추가질환
56	**K75.4**	**자가면역 간염**	추가질환
57	L10	천포창	
58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추가질환
59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60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61	M31.0-M31.4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62	M32	전신 홍반성 루프스	
63	M33	피부다발 근육염	
64	M34	전신경화증	
65	M35.0-M35.7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 침습	
66	M45	강직성 척추염	
67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추가질환
68	**M94.1**	**재발성 다발연골염**	추가질환
69	N18	만성신부전	
70	N25.1	신장성 요붕증	
71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연번	상병코드	상 병	비고
72	**Q05**	**척추갈림증**	추가질환
73	**Q06.2**	**척수갈림증**	추가질환
74	Q07.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75	Q20.0-Q20.2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76	Q22.0	폐동맥판막 폐쇄	
77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78	Q23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79	Q24.5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80	Q25.5	폐동맥 폐쇄	
81	Q26.0-Q26.6	대정맥의 선천 기형	
82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추가질환
83	Q75.1	머리얼굴뼈형성이상(크루종병)	
84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추가질환
85	Q77.4	연골무형성증	
86	Q77.5	이영양성 형성이상	
87	**Q78.0**	**불완전골형성증**	추가질환
88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알브라이트 증후군)	
89	Q79	달리분류되지 않는 근육골결계통의 선천기형	
90	**Q81.1, Q81.2**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추가질환
91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폰렉클린하우젠병)	
92	Q86.0	(이상 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93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추가질환
94	Q87.1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95	**Q87.4**	**마르팡증후군**	추가질환
96	Q90	다운증후군	
97	Q91	에드워드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98	Q96	터너증후군	

■11개 만성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결핵, 기타만성폐쇠성질환, 악성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부록3]

의의신청서 견본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부설) 전국빈민상담네트워크 본부
http://poverty21.com.ne.kr
빈곤문제 상담 Hot Line 1588-9412, 080-333-9413(생생생 - 구사일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2동 169-1 삼원주택 102호, (우:135-802)Tel: 02-577-6809, Fax: 02-577-6011,E-mail: spernpd1@chol.com, poverty21@korea.com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00구청장
참　　조 : 00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　　목 : 기초생활보호의뢰 및 심사관련 이의 제기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첨부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의뢰 및 심사관련 이의를 신청 합니다.

첨부 : 1. 기초생활보호 의뢰서
　　2. 심사관련 이의 청구

한 국 빈 곤 문 제 연 구 소
대 표 이 기 우

[부록4]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보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가 족 사 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월소득	동거여부

주 거 실 태	□자가(아파트·주택 평) □전세(면적 평, 전세금 만원) □월세(보증금 만원/월 만원) □무료 □기타( )
	(구체적인 주거상황)

생 활 실 태		
	소 득	자가소득(월 원) / 기타 지원금(월 원)
	재 산	
	건강상태	
	(직업, 수입 등 특이사항)	

기 타	(어려운 생활환경 등 보호필요성에 대한 의견, 상담내용 : 별지 첨부 가능)

위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보호의뢰자 :
확 인 자 :
연 락 처 :

※보호의뢰자, 확인자, 연락처는 각자 의뢰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야 됩니다.

[부록5]

<관련 홈페이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poverty21.com.ne.kr

지침: http://blss.mohw.go.kr -> 분야별 정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진단프로그램: http://blss.mohw.go.kr->수급자격진단->수급자격진단하기

홈페이지 주소	활용가능한 자료	운영기관 및 단체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정책 전반	보건복지부
http://www.blss.mohw.go.kr	기초생활보장업무	보건복지부(생활보장과)
http://www.work.go.kr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노동부
http://www.nts.go.kr	사업등록자 관련자료 및 아파트 등 기준시가	국세청
http://www.mma.go.kr	입영대상자 확인	병무청
http://www.mogaha.go.kr	일반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http://www.moct.go.kr	지적자료 등	건설교통부
http://www.mocie.go.kr/	장애인 자동차 등	산업자원부
http://www.kpi.or.kr	직종별 표준노임단가 등	한국물가정보
http://www.jahwal.or.kr	자활후견기관 업무	자활후견기관협의회
http://www.kihasa.re.kr	사회복지 관련 연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tp://www.neonet.co.kr/rebank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뱅크
http://www.klac.or.kr/	저소득층 무료변론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nih.go.kr	사회복지 관련 교육	국립보건원
http://www.jugong.co.kr	공공주택 관련 정보	대한주택공사
http://member.kapanet.co.kr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대한감정평가사협회
http://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 관련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http://www.ccej.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경실련
http://www.kepad.or.kr	장애인 취업 및 알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freeway.co.kr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http://www.ksswa.or.kr	사회복지 관련 자료	사회복지행정연구회
http://www.npc.or.kr	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rc.go.kr	장애인 직업재활	국립재활원
http://211.57.231.211	저소득층 구호 및 재해구호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전화 : 02-503-7565~6, 02-2110-6191~3